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연구관 김 학 신**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3
제2장 성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5
제1절 성범죄의 의의와 유형 .....	5
1. 성범죄의 의의 .....	5
2. 성범죄의 유형 .....	8
가. 친족성폭력 범죄 .....	9
나. 아동성폭력 범죄 .....	10
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	12
라. 아내강간 .....	14
마. 데이트 강간 .....	15
바. 성희롱 .....	16
제2절 성범죄 발생원인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18
1. 성범죄 발생원인 .....	18
가. 개인적·심리적 원인 .....	18
나. 사회적 원인 .....	20

다. 여성학적 원인 .....	21
라. 법적인 원인 .....	22
마. 문화적인 원인 .....	23
2.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24
가. 피해자의 정의 .....	24
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26

### 제3장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

#### 제1절 외국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 .....

1. 미국 .....	27
가. 경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 .....	27
나.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	28
1) 미국 형법전(United States Penal Code) .....	29
2)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	29
3) 강간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 .....	30
4) 성범죄자 등록법 .....	30
다. 미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	31
2. 영국 .....	32
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	32
나.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	33
1) 성범죄법(Sex Offences Act) .....	33
2) 성폭력범죄자법(Sex Offenders Act) .....	33
3)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	34

다. 영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	34
3. 일본 .....	35
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	35
나.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	37
1) 형법 .....	37
2) 스토킹처벌법 .....	38
다.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	38
<b>제2절 우리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보호 실태 .....</b>	<b>40</b>
1. 경찰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현황 .....	40
2. 인권보호센터와 여성상담실 운영 .....	42
3. 경찰의 정보제공 .....	43
4. 경찰 운영상의 프로그램 .....	44
5. 2차 피해방지 시스템 .....	45
6.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	49
<b>제3절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b>	<b>51</b>
1. 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	51
2. 경찰의 운영상 문제점 .....	52
3.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관 제도 .....	55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활용상 문제점 .....	56
5. 민간기관과의 협조상 문제점 .....	58

제4장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경찰의 보호방안 .....	60
제1절 경찰의 수사활동에서의 2차피해 방지 .....	60
1.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 .....	60
2.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의무화 .....	63
3. 장애우와 아동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	64
4.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65
5. 경찰의 피해자 조사 및 면접기법 .....	67
제2절 성범죄 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 .....	68
1. 강간죄 범위의 확대 .....	68
2. 성범죄의 비친고죄 필요 .....	69
3. 성폭력 특별법의 특별절차 규정 .....	72
가. 영상물 촬영에 관한 부원(不願)의사 인정 .....	72
나. 조서사본의 교부 .....	73
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의무화 .....	73
4. 공소시효의 연장 .....	74
제3절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	75
1. 경찰과 민간기관 상호 연계 강화 .....	75
2. 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	77
제5장 결 론 .....	78
【참 고 문 헌】 .....	82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목적

21세기의 가장 큰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변화일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개인용 휴대전화, 가상현실, 멀티미디어 서비스, 근거리 통신망과 인터넷, 쌍방향 텔레비전 및 인공지능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새로운 정보화 사회로 이끌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일 것이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또는 이로 인한 생활의 편리, 시간의 절약 등 다양한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개인정보 유출, 해킹, 인터넷 도박, 음란사이트의 쉬운 접속 및 음란물 유통 등 다양한 역기능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0월 부산 YWCA가 주최한 '음란물 중독예방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이 성범죄 급증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sup>1)</sup>

이처럼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급속하게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검거와 더불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안을 제기하고 있

---

1) 장규석, 부산 CBS, 2008. 10. 24일자.

다.

특히 경찰은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수사도 국민의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에 이라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2)</sup>

현재의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범죄수사를 행하고,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책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시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사건 처리의 제1차적 책무를 지며 가장 먼저 범죄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 발생 후 제일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은 사건 해결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분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으며 재발방지 또한 경찰의 임무에 속하기 때문이다.<sup>3)</sup>

범죄피해자 중에서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부당한 침해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순결이나 정조의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뿔뿔이 밝히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처우가 시급하며, 다양한 사회적 지원서비스와 관련기관간의 밀접한 연계가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범죄자체로 인한 직접적 피해인 1차적 피해 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과정의 2차 피해를 받기가 쉬운 존재이다. 현재 우리 경찰은 시민들에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수사협

2) 이황우, 경찰행정학(제4판), 법문사, 2005, 13-15면.

3)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치안연구소, 2002, 2-3면 參照.

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성범죄의 검거율을 높이고 있으며, 잠재적 피해자 등을 상대로 피해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기방어 기술을 익히게 하고 잠재적 범인에게 근원적인 범죄의 원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의 이해와 보호라는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고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실태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경찰이 수사과정 및 활동에서 피해자가 2차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각적인 경찰 운영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더불어 성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에 있어 우리 경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인식시키고자 한다.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2008. 5. 14.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 증가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성폭력 범죄는 무려 83%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성 범죄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경찰의 역할을 심도있게 연구하고자, 제2장에서는 성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성범죄의 의의와 유형 그리고 성범죄의 발생원인과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우선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 선진국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 나라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와 비

교·검토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현재 우리 경찰이 실행하는 보호 방안과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찰의 수사활동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가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의식의 변화와 최근 경찰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안을 소개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애우와 아동 및 어린이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대안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정보제공, 경찰의 피해자 조사 및 면접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성범죄와 관련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으로서 현행 우리 형법에서의 강간죄 범위의 확대, 성범죄의 비친고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현재에도 꾸준히 지켜지고 있는 우리 경찰과 관련 민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연결 구축안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적인 조사·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 자료와 경찰·검찰·법원, 관련 민관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통계자료 그리고 형사법적 관련 논문 등 선행된 연구 문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불어 실무상의 사례는 경찰과 검찰기관의 수사 사례를 참조하고, 다양한 관련 유관기관의 인터넷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 제2장 성범죄에 관한 이론적 배경

### 제1절 성범죄의 의의와 유형

#### 1. 성범죄의 의의

성폭력 범죄<sup>4)</sup>는 다른 형태의 폭력과는 달리 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즉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무형·유형의 강제력 행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폭력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친근감이나 애정의 표현’ 과 ‘폭력’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함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하는 행위 및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로 유인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sup>5)</sup>

-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제2조(정의) ①항에서 "성폭력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형법 제22장 성폭속에 관한 죄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제244조(음화등의 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3.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297조(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죄
- 5) 페미니스트들은 성폭력의 범위를 더욱 넓게 정의하고 있는데, 성폭력은 사회적·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동

이 성폭력이란 용어는 강간<sup>6)</sup>이 성에 의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자 여성운동가들이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사용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강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대신 ‘성폭행’이라고 표현하고, 강간·강제추행·성희롱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성적 침해를 ‘성폭력’이라고 표현한다.<sup>7)</sup>

미야자와 고이치(宮澤浩一)<sup>8)</sup>는 성범죄와 관련한 주제에는 가장 고전적인 주제인 강간부터 시작하여 유아·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 성추행, 스토킹이 포함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 강간 등 성적 공격에 대해 폭행 또는 난폭이라는 용어가 성적 공격을 당한 피해자를 고려한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유아기·아동기·사춘기·성년기를 가리지 않고, 아는 사람·타인으로부터의 공격에 상관없이 생각도 못한 기회에 성적 공격을 받은 피해 여성의 트라우마(Trauma, 마음의 상처)<sup>9)</sup>의 심각

성간에 이루어지는 어느 일반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그리고 양성의 교섭관계가 상식적으로 있는 가정내에서의 어느 일방에 대하여 행해지는 가정내 폭력현상도 포함하고 있다. 이경자,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13-14면; 구수경,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여성연구논집 제4집,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3, 89면;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5, 132-133면; 윤은주,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5면 재인용.

- 6)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강간을 통상적인 의미의 성행위가 아니라 입이나 항문을 포함하는 성행위를 의미한다; Irving J. Sloan, *Rape*(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s, Inc., 1992, p. 2.
- 7) 김용세,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 충남대 학생생활연구 제30권, 충남대학교 학생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2004, 58면.
- 8) 日本 慶應義塾大学 名譽教授.
- 9) 트라우마라는 말의 어원은 [상처]이다. 외과영역에서는 트라우마라는 말은 신체의 상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다. 트라우마가 [마음의 상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이다. 현대적인 트라우마의 정의는 어느 특정체험의 존재와 정신기능인 어느 [상태]에 대한 규정에 의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트라우마가 되기 쉬운 체험으로는 범죄피해 이외에 전투, 아동학대, 강간, 자연재해, 인위재해, 사고, 수용소, 난민체험 등 다양하다. 또한 사건 직후 체험만이 아니라 사건의 목격, 사태의 직면도 트라우마가 되기 쉽다. 예를 들면 폭력범죄 피해자인 본인만이 아니라 그 범죄를 목격한 사람, 사건 직후 관계자도 큰 정신적 타격을 받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를 받은 그 장면이 자주 회상되며, 즉 재체험을 하며 트라우마를 받은 그 장소나 사람을 피하는 증상이 나타나며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수면장애나 주의집중 곤란 등이 보여지는데 이와 같은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사회적, 직업적 기능저하를 수반하는 경우 심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라고 한다. 하지만 PTSD는 외상적 체험으로부터 4주 이내에 발병하고 1

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종류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비난과 비판을 가해 ‘인격에 대한 성적인 침해’로서 ‘성적 공격’이라는 용어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한국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 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 범죄에 해당한다고 간주한다.<sup>11)</sup>

성폭력 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어느 법에서도 성폭력의 개념을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해당 범죄를 나열함으로써 개념 규정을 대신하고 있다. 더욱이 형법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졌었다. 여성인권운동에서는 생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회적 범죄인 성폭력 범죄를 정조와 연관하여 명명한 법의 가부장적인 발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수정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5년 형법 개정시 제32장의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었고, 아직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의 변경요구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친고죄란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기간은 1년이다. 그러나 강간치상이나 특수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은 비친고죄이다. 또한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법이

---

개월 정도 이내에 회복되는 급성스트레스(Acute Stress Disorder:ASD)장애와는 구별된다.  
<http://www.kcvc.net/>

10) Kube, 宮澤浩一 譯, ドイツに於ける被害者支援について, 警察學論集 54/7, 2002. 176面

11) 조 옥,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7면.

개정되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성폭력의 개념, 친고죄, 공소시효 등의 법·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산재해 있고, 현행법의 운용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은 수사, 재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2)</sup>

## 2. 성범죄의 유형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 범죄의 여러 유형을 좀 더 자세히 행위 및 대상에 따라 구분하였다.<sup>13)</sup> 첫째, 행위에 따른 성폭력 유형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도강간, 인신매매, 강요된 매매춘, 음란공연, 성협오 행위<sup>14)</sup>가 포함된다. 둘째, 대상에 따른 성폭력 유형에는 아동성학대(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신체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상시 성적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성폭력(아내강간), 직장내의 성폭력이 포

12)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포한 성폭력 피해자 권리 헌장[수사·재판 과정에서 보호 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①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 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 받을 권리 ②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③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④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 ⑤신변안전 조치를 요청할 권리 ⑥수사·재판 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⑦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⑧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⑨가해자로 인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13)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성폭력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①성적추행(가슴, 엉덩이, 성기부위 등을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②성기노출(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킴) ③강간미수(강간을 시도했으나 성립이 안된 경우) ④강간(윤간, 강도강간, 근친강간 포함) ⑤성적 가혹행위(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힘)⑥음란물 보이기 및 음란물 제작에 이용 ⑦음란전화

14) 성협오 행위에는 음란동영상, 도색잡지, 음란만화, 음란영화 등의 제작 및 배포행위, 치부노출 행위 등이 있다.

함된다.<sup>15)</sup> 아래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유형 중 친족성폭력, 아동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아내강간, 성희롱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가. 친족성폭력 범죄

한국성폭력상담소(KSVRC)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성폭력상담건수는 총 1,948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273건으로 14%에 이르렀다. 이는 2006년의 215건(16.2%)보다 늘어난 수치로 이는 직장 내 성폭력인 490건(2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다음으로는 친밀한 관계 174건(8.9%), 초·중·고·대학 149건(7.6%), 주변인의 지인 118건(6.1%) 순으로 나타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발생률이 타인에 의한 성폭력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나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신고하거나 고소한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했다. 보통 친족에 의한 성폭행은 대부분 집 밖으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그 실태가 감춰져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근친의 성폭행 사례는 의외로 많다고 발표했다<sup>16)</sup>

친족성폭력의 개념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리고 역사적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법과 규범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다. 친족성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물학적으로 혈연인가 아닌가, 혼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등이 1차적 판단근거가 되나 대체로 법률적으로 혼인이 금지되는 사이에서의 성관계를 의미한다.<sup>17)</sup>

15) 최일섭·최성재, 전계논문

16) 정옥주, 가정내 성폭력 지구촌 확산에 충격, NEWSIS, 2008. 5. 13일자.

17) 1982년 Bruce Gottlieb는 친족 성폭력을 가족 혹은 확대가족관계(부모·삼촌·숙모·조부모·사촌·외부·친척 등)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상관계, 특히 사회 규범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런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가족 구성원간의 상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전대향, 강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95, 237면; 최유진,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0면 참조; 윤은주, 전계논문, 7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친족성폭력 범죄의 대책으로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친족 성폭행이란 비정상적인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드문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이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터부시되는 일이라고 숨길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끄집어내야 더 굽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가해자를 위한 교정프로그램의 마련이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것보다 더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르는 만큼 특별한 교정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신체적·정신적인 상처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친족성폭력의 경우 수년간 덮여 있다가 결혼할 무렵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sup>18)</sup>

## 나. 아동성폭력 범죄

아동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정의와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해야한다. 아동복지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22호], 제2조에서 ‘아동’ 이라함은 18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주로 유아, 어린이, 소년, 연소자, 미성년, 청소년, 자녀의 개념으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또한 발달적 개념은 신체적 성장 및 정신적 성숙이라는 입장에서 정의하고 있다.<sup>19)</sup>

성폭력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는 학대, 성폭행,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성학대가 가장 폭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아동복지법 제2조 4호에서 아동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

면 제인용.

18) 김봄내, 증가하는 친족 성폭행 실태, 일요시사, 2008. 9. 20 일자.

19) 한성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12면.

20) 서구에서는 주로 아동성학대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성폭력이라

고 있다.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그 중에서 성적학대<sup>21)</sup>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로서 성기나 기타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여 강간·성적행위·성기노출·자위행위·성적유혹 등 성인의 성적충동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진 신체적 접촉이나 상호작용 모두를 말한다.<sup>22)</sup>

200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의 발표에 의하면, 아동성폭력 범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주변 인물이 가해자인 경우가 80%에 달하며, "취중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아니고 성도착증이 심한 사람이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을 유인해 범죄를 저질러도 입증이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 수사와 재판, 진료, 언론 보도 과정에서 잘못된 통념으로 고통 받는 것을 2차 피해로 규정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발생한 2차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아동의 경우 6하 원칙에 맞춰 말하지 못해 신빙성에 의심을 받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담당자가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하여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사례도 다수있다"

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아동성학대의 개념이 다양한 구체적 성적행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는 사법적으로 처리하기에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다.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108면.

21) 아동성학대의 형태는 신체적 접촉(contact)과 비접촉(noncontact)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자는 키스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성욕을 부추기는 이야기 혹은 성적 노출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 즉 아동성학대에는 노출(exhibitionism), 훔쳐보기(voyeurism), 키스하기(kissing), 더듬기(fodnding), 구움(fellatio), 성교(viginal or intercourse), 아동 포르노(child pornography)가 포함된다. J.R. Conte, *A Look at Child Sexual Abuse*, Chicago National Committee for Prevention for Child Abuse, 1986;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0, 345면; 최유진, 전제논문, 12면 참조.

22) 안동현, 아동학대의 폐해와 그 조치, 수사연구 제199호, 2000년 5월호, 34-35면 참조.

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성폭력 전담검사를 도입해 제도 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다르고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검사가 바뀌기도 해 변호인의 밀착 조언을 받는 가해자와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아동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검사 양성이 절실하며, 성폭력 전담검사제를 장기간 동안 전문화할 것을 제안" 했으며, "아동성폭력 범죄는 전체 성폭력 범죄의 20%, 19세 미만 성폭력 범죄는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23)</sup>

## 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최근 4년 동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06년 전국 각 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성폭력 상담 11만9655건 중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는 17.3%인 2만 763건을 차지해, 13만2201건 가운데 1만692건(8%)을 기록한 전년도(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정인지체장애가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지체장애가 18.3%, 뇌병변 장애와 청각·언어 장애가 각각 7%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중복장애인 경우는 2.9%이며, 발달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는 각각 1.4%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2년사이 언론을 통해 부각된 장애인성폭행 발생 건수 50여 건 가운데 상당부분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sup>24)</sup>

23) 배혜림·정재호, 아동성폭력 가해자 80% '知人' 수사기관 '2차성폭력' 여전, Newsis, 2008. 10. 23 일자.

24) 손대선, 여성장애인 성폭행 위험수위①, NEWSIS, 2008. 3. 19일자.

장애인 복지법 제4조<sup>25)</sup>는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더불어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에 따르면 장애인 여성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을 무(無)성적 존재로 보는 편견에 시달린다고 한다. 또한 경찰, 검찰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장애인 여성의 성적 존재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있다. 장애여성은 여성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부각시켜 '장애인' 범주로만 묶어버린다. 이는 피해 여성이 일부러 시민 단체를 찾아가 상담 등을 통해 이를 알리지 않는 한 피해 사실조차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2007년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장애인성폭력 상담수는 한 달에 100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성폭행 피해자들은 민·형사상의 문제까지 제기하지 못한 채 그저 '하소연'을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 여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성폭행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리길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6)</sup>

현재 한국의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는 전국에 20여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과 장애인 피해자가 안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일선 상담기관이 상담에 애를 먹고 있다. 장애인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곧바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병원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상담소들이 추천한 소수 변호사들에 의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폭력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경찰, 검찰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적

25) 제4조 (장애인의 권리) ①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②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26) 손대선, 여성장애인 성폭행 위험수위②, NEWSIS, 2008. 3. 20일자.

절차상으로 장애인여성의 경우 수사절차상 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인데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심리적 손상을 받는 등 불이익은 물론, 피해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여성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의료적·법적 지원 체계가 미비해 유기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급선무다. 의료적인 면에서도 장애인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병원치료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피해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외상의 치료를 받는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태이다.

## 라. 아내강간

우리 현행 형법 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는 부녀(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로 한정하고 있다.

반성폭력 운동은 모든 종류의 강요된 성관계는 가해자가 누구이며 피해자와 어떤 친밀한 관계인지 상관없이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관점에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될 수 있다.<sup>27)</sup>

실제 서구 선진국을 비롯해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1975년 미국의 다코다(Dakota)주에서 처음으로 배우자의 강제적인 강간을 범죄로 인정하였다. 이 주 입법부는 주정부의 법령(State's statutes)을 고치고 실질적으로 남편에게 무제한의 성적접근의 권리를 주었던 보통법(common law)의 예외를 거부하였다. 이로부터 많은 주에서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남편은 체포되었고,

27) 최유진, 전계논문, 14면.

비록 동거중인 커플이라도 기소되었다.<sup>28)</sup> 이후 아내강간은 범죄로 인정되었고, 또한 1984년 결혼한 여성에게 처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면서 “혼인 증명서가 남편이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으로 파악될 수 없으며 기혼 여성도 미혼 여성과 같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영국에서도 94년 부부 강간을 처음 인정했고,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혼인외의 성교’로 규정했던 독일도 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이 문구를 삭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뚜렷한 법 규정이 없으며,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에 한해 아내 강간을 인정하고 있다.

1999년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아내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sup>29)30)</sup>

## 마. 데이트 강간

데이트 강간의 개념도 주장하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남녀가 이성애를 회구하거나 감정교환이 있는 상태나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sup>31)</sup>이라고 다소 관대하게 정의되고 있는 한편,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sup>32)</sup>이라고 피해자 특히 여성측을 옹호하

28)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E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Inc., 2001), p.263.

29) 김용식, 아내 성폭행 유죄 의미와 서구사례, 한국일보, 2004. 8. 20일자.

30) 대법원, 1970. 3. 선고, 70도29판결; 우리의 현행 법조문은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자라고 명시하여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아내 강간을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던 1970년대 대법원 관례에 의해 아내강간은 부정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아내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 대해 “사건 당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면 남편이 처를 강제로 간음했다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31) 전대양, 강간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1995, 240면; 윤은주, 전개논문, 9면 재인용.

32)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132면.

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개념 모두 데이트 강간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이고 상호친밀감이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강간이라는 데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듯 하다.

## 바. 성희롱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 함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sup>33)</sup>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희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 을 의미한다.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나타났다. 성희롱은 객관적인 현상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에 기반을 두는데 이러한 인식은 구체적인 상황속에서 수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up>34)</sup>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서 이제까지 가볍게 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 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는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33)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0월 이른바 ‘우조교 성희롱 사건’ 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성희롱’ 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지만, 우리사회에서 갖는 한정성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희롱은 적절한 용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장필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지침서 개발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4. 3면.

34) K. M. York, *Defining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 A Policy-Capturing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4), 1989, p.831; 전영실,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28면 재인용.

법률'을 마련하고 이들 법률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직장에서의 성희롱 방지에 대한 고용 관리상의 배려를 사용자의 책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성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공민권 제7조(성희롱 용인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고용기회균등위원회에 의해 고발된다.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을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① 육체적 행위, ② 언어적 행위, ③ 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①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②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③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 제2절 성범죄 발생원인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1. 성범죄 발생원인

#### 가. 개인적 · 심리적 원인

개인적 · 심리학적 접근은 주로 성폭력 가해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성폭력의 원인을 찾는데, 특히 성폭력을 ‘일탈 혹은 병적인 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접근에서는 구애능력의 결핍, 일탈적인 성적기호(Sexual preference), 아동기의 성적 학대의 경험, 남성호르몬의 과다분비, 뇌이상, 성적 자극의 통제력 상실 등을 주목한다. 즉 비정상적인 성으로서의 성폭력은 비정상적인 성을 추구하는 집단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이다.<sup>35)</sup>

심리학적으로 성폭력은 사이코 증후군의 외적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이상심리가 외적으로 표출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사이코 증후군에서 성폭력을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고, 강제 추행하는 것은 물론 언어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이 결혼에 의해서 성립한 가정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이런 성폭력은 주로 결혼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는 비제도적 성적폭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폭력도 사이코 증후군의 외적표출이라는데 가정폭력과 공통점이 있다. 인간의 성에 대한 해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이론을 빌자면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성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이 관음증, 동

35) 최인섭·김성언, 성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33면.

성연애, 외디푸스 콤플렉스 등의 변태적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성폭력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된 성적 호기심, 남성의 발산욕구 등의 외적표출이 결혼이라는 제도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일탈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강간의 원인 및 아동의 성폭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원인모델이 제시되었다.<sup>37)</sup>

① 일탈적 성적 공상 : 강간범이나 아동 성폭행자의 성적 흥분(자위행위)과 결합된 일탈적 성적 공상은 성폭력 범죄의 성적 전조 또는 징후일 수 있다. 성폭력범죄자는 남성적 자기신뢰와 남성적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환상은 상대방에 대한 지배와 그들의 굴종과 굴욕을 바라는데 집중된다.

② 인지적 왜곡 : 성폭력 범죄자들은 인지적왜곡(중립화, 합리화)을 통해 피해자의 손상을 부인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충동으로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들은 이른 유년기에 또래의 하위문화에서 또는 만연된 여성 적대적, 아동 적대적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과 아동의 성적 희생의 정당화를 학습한다. 예컨대 그들은 ‘여성은 성적으로 정복되어야 한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 폭력을 즐긴다고 생각한다. 아동성폭력범죄자들은 아이가 되려는 이데올로기에 이끌리며 “아동과의 성행위는 정상이다. 그것은 아이에게 해롭지 않다. 아이가 범행에 동의하였다. 그 때문에 범행을 하게 되었다. 아이 자신과 외관상 성행위에 흥미를 보였다” 고 생각한다. 이러한 합리화 혹은 부인 메커니즘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책임에 연막을 치거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덮어씌운다. 그들은 성폭력 범죄를 그들의 남성적 역할의 표현으로 여기며 여성과 아동을 그들의 소유대상으로 생각한다.

36) 윤은주, 전계논문, 18-19면 참조.

37) Schneider, Kriminalistik, 4. 1999, S. 234-234; 장규원의 3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39-40면; 윤은주, 전계논문, 19면 재인용

③ 자기통제의 결여: 성폭력범죄자에게는 흔히 현실적 자신감과 적절한 자기통제가 결여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자는 공격과 충동에 대한 통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생활 형태와 충동성은 학습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통제되지 않는다. 성폭력 범죄자는 우울한 상태와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분노, 화, 노여움을 잘 삭이지 못한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자의 기본 통제의 결여는 결국 여성에 대한 미움으로 강간으로, 의기소침한 기분을 종종 아동에 대한 성폭력으로 발전시킨다.

④ 성폭력 범죄자는 성장과정에서의 결함, 부정적 사회화 경험으로 인한 인격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사회적 소외, 외로움, 우울증에 빠지는 결함이 있는 사회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성인과의 상호관계가 어렵고, 여성을 지배받는 자 혹은 협박받는 자로 느낀다. 그들은 인간 상호간의 합리적인 문제해결책을 배우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성폭력범죄의 부정적 결과를 바라볼 능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입이 결여되어 있다.

## 나. 사회적 원인

성폭력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남녀 불평등한 성차별적인 한국사회의 구조, 즉 권력관계를 꼽고 있다. 가부장제인 우리 사회는 여성과 아동을 남성이나 어른에 비해 낮은 존재, 막대해도 되는 존재로 여겨 남성과 어른에 의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려서부터 남자아이에게는 공격성을 진정한 남성다움을 가르치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순종적이고 자기주장을 펴지 못하는 착한 여자로 기르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노정된다. 이렇게 교육받은 남성과 여성은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갖게 되며 이것은 성관계에도 그대로 연결된다. 가정 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도 상하위계 관계나 지

배와 복종의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남성이 성폭력을 했을 경우에도 용기 있고 남성다운 행동을 한 것으로 여기거나 한 때 저지를 수 있는 정도로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가 성폭력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성폭력을 허용하게 만들고 성폭력을 한 경우에도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직장내 성폭력은 이 사회적 요인에서 기인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 이중윤리에 의한 사람들의 인식에서 비롯된 사건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38)</sup>

## 다. 여성학적 원인

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가부장적인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강간은 여성을 향해 폭력을 조장하는 어떤 문화적 조건의 결과이다.<sup>39)</sup> 즉 가부장제적 사회는 남자와 여자의 이분법적 근거에서 출발하고, 남녀의 관계를 지배관계로 개념화 한다는 것이다.<sup>40)</sup>

1970년대 초 여성주의자들은 처음 강간, 아내구타 등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남성들의 이 같은 폭력의 행사가 여성을 위협하고 통제하며 나아가 가부장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sup>41)</sup>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좀 더 넓은 개념의 성폭력, 즉

38) 윤은주, 전계논문, 21면.

39) Mary E. Odem & Jody Clay-Warner, *Confronting Rape and Sexual Assault*,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Inc., 1997, p.91.

40) 김은경,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3면.

41) 당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다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성이나 공격성이 많은 사회에서 남성 성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둘째, 강간과 정상적인 이성간의 성

협박과 회유, 권력 등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이 어떻게 여성을 억압하는 가에도 관심의 폭을 넓혔다.<sup>42)</sup>

## 라. 법적인 원인

성폭력은 최후에 최소한의 힘으로 개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것은 성이라는 인간고유의 생활영역 내에 대한 개입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의 특성은 친고죄가 많다는 것이다. 친고죄라 함은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친고죄로 한 이유는 성폭력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강간치상과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것은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한계가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친고죄가 됨으로써 가해자는 성폭력피해자의 합의를 통하여 경제적 배상을 하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는 형태가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과립치한 범죄를 자행하고도 자신의 비도덕적 비행을 금전적인 배상으로 만회하려는 행태인 것이다. 이러한 친고죄가 바로 성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sup>43)</sup>

---

관계에는 질적인 측면에서 공통성이 존재하고 단지 양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셋째, 남성은 여성에게 있어서 후견인이며 보호자인 동시에 약탈자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넷째, 남성성의 보완으로써 구축된 여성 성은 여성의 자기결정 능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남성의 공격에 대한 육체적 심리적 취약성을 증가시킨다. 다섯째, 강간은 성적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 즉 남성의 집단적 지배를 상징하는 테러리즘에 가까운 행위이며 현행법이나 사법체계가 여성을 지지 보호해 주지 못하고 여성의 상해에 적절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조 옥, 전계논문, 11-12면.

42) 최일섭·최성재, 전계서 155-156 참조.

43) 김호철, 대여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전략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5호, 1996, 58-62

또한 성폭력에 대한 사법계의 인식이 부족한데서 그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즉 성폭력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법계의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성폭력특별법은 법제정의 기본 취지인 성폭력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한 기본 조항이 빠져 있고,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피해여성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더라도 모욕적인 경험을 하는 피해자가 많다는 것이다.

## 마. 문화적인 원인

성폭력의 원인을 왜곡된 성문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성을 평등한 남녀간의 만남으로 보지 않고 남성을 성의 주제로 여성을 대상으로 상품화시키는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는 남녀사이의 진정한 애정과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성을 오히려 소회시키고 있다. 결국 이는 일탈적 성행위들을 부추기고 근본적으로 남녀 불평등한 관계를 더욱 확고히 만들고 있다. 또한 10대들과의 원조교제, 정상적인 성관계보다는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보여주는 음란물 동영상,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광고와 영화, TV 등이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44)</sup>

또 다른 원인으로 성교육 부재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성의 사회적 성격을 간고한 채 순전히 본능으로 치부함으로써 성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라고 믿어 오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바람직한 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고하고 판단할 기회를 막아버리게 되었다. 또한 포르노 영상물, 인터넷 매체를 통한 음란물 등 잘못된 성지식은 여과되지 않고 습득하게 되어 그것이 정상적인

면 참조.

44) 윤은주, 전계논문, 23면.

행위라고 받아들여 결국 성폭력 범죄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2.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 가. 피해자의 정의

현행법상 피해자 개념은 헌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구조법, 소송촉진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성폭력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규정에는 피해자 개념 및 범위는 명백히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보호 대상 또는 적용대상이 되는 범죄피해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즉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제2조 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정의일 뿐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정의 개념자체가 없다. 그리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절차 제25조에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을 피해자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고, 범죄피해자구조법 제3조에서 ‘범죄피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러한 규정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개념이 명확하다고 하기 어렵다.<sup>45)</sup>

학설상의 논의에 있어서도 ‘피해’를 각 범죄유형에 있어서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고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어떠한 범죄로 인하여 일정한 법익을 침해 또는 위협당한 자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에 는 보호법익의 주체 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체

45) 오영근·이천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14면.

가 된 자를 포함하며,<sup>46)</sup>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은 물론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한다. 또한 여기에서의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자만을 말하며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47)</sup>

헌법재판소도 피해자의 개념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 때문에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로 보고 있지만,<sup>48)</sup> 간접적인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경우까지 피해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sup>49)</sup>

그러나 이것은 범죄자를 처벌할 목적 또는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적극적인 지위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하지 않다. 즉 피해자는 범죄에 의해 신체나 재산 등의 법익이 침해되는데 그치지 않고 쇼크나 스트레스 등 정신적 충격이나 종래의 생활환경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또는 인격적 영향 등 법률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피해도 입고 있어 이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라 함은 반드시 직접 범죄행위의 대상이 된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 등의 근친자나 사실상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구조행위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등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50)</sup>

46)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 헌마 262 결정.

47) 박미숙, 현행법상 형사피해자의 범위, 한국피해자학회 2004년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7면 이하;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1998, 205면 이하;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안암법학, 창간호, 1993, 318면 이하;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4면 이하 참조.

48) 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 헌마 91 결정; 1995. 7. 21. 선고 94 헌마 136 결정; 1997. 2. 20. 선고 96 헌마 76 전원재판부; 2000. 9. 6. 선고 00 헌마 550 제2지정재판부.

49) 헌법재판소 1993. 3. 11 92 헌마 306.

50) 안동준,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그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4 합병호, 1990, 155면 이하; 이경재 역, 비판적 피해자학 - 전통적 피해자학의 피해자 개념에 대한 비판(Marilyn D. Mcshane/Frank P. Williams, Crime & Delinquency, Vol.38. No.2, April 1992, pp.258-271,

1985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sup>51)</sup>에서 피해자를 ‘각국의 실정형법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육체적·정신적 상처,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을 입었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 이라고 정의한 것은 피해자의 개념을 넓게 파악하려는 하나의 경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경찰은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가 접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기관이다. 피해자는 범죄로 인하여 피해와 충격을 받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기관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범죄 피해자 대책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피해자 방지를 위한 시책 또는 정책 일반 등을 총칭하는 의미이다.<sup>52)</sup>

수사기관인 경찰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해자를 접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기대나 요구를 받아주어야만 한다. 본래 피해자의 보호나 요구는 경찰에 있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본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경찰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나 기대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3호(992/9-10), 36면 이하 참조.

51)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the Abuse of Power: Resolution 40/34 of 29 November 1985.

52) 여기에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와 피난처 제공, 정신적 부조, 재활지원, 기타 법률적 조언과 구조 등을 포괄하는 피해자 지원, 그리고 국가나 시민단체에 의하여 추진되는 피해자 방지 활동이 포함된다.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50-51면; 김용세·유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 연구 제10권 제1호, 2002, 165-172면 참조.

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규정에서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실태와 문제점

### 제1절 외국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 실태

#### 1. 미국

##### 가. 경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범죄의 다발경향과 함께 범죄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권리 운동이 고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비인간적이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결여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하여 공중의 반발이 높아졌으며, 피해자학 연구에서 형사절차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sup>53)</sup>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1970년대 초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이 고조되고, 경찰에 의한 본격적인 피해자의 지위를 회복하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원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강화

---

53) 최유진, 전계논문, 39면.

하려는 입법적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되었다.<sup>54)</sup> 1970년대 후반부터 피해자의 권리운동(The Victims Rights Movement) 내지 피해자 운동(The Victim's Movement)이 연방과 주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1980년대 피해자 보호, 원조제도의 확대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1982년 4월 레이건 대통령의 “범죄피해자에 관한 대통령 특별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12월에 발표한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피해자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연방정부 및 주정부, 의회, 형사사법기관, 등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모든 기관에 68개 항목의 권고가 제시되었다.<sup>55)</sup>

이후 1982년에 제정된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VWPA: The Victim & Witness Protection Act)」이 제정되어 피해자와 증인의 공정한 처우를 위한 연방가이드라인이 규정되었고, 1984년 「연방범죄피해자법(VOCA : The Victims of Crime Act)」가 제정되어 연방정부에 의한 보조금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자기금(Crime Victims Fund)을 만들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급속도로 확대 및 피해자구제제도의 재정적 기반이 정비되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상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꾀하였다.<sup>56)</sup>

## 나.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54) 1974년 처음으로 플로리다(Florida) 주 경찰과 인디애나 주 경찰에 의해 경찰에 기반을 둔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이 발족되었다. A. Roberts, *Delivery of Services to Crime Victims: A National Surve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1), 1991, p.130면.

55) 최유진, 전계논문, 40면; 윤은주, 전계논문, 38면 참조.

56) 미국의 피해자지원 조직은 NOVA(National Organization for Victim Assistance)를 비롯해서 1990년대 7,000개 이상 급증하여 현재는 1만개를 넘는다고 한다. 이들 조직의 특성에 의하면 비영리민간조직, 검찰에 기반을 조직, 경찰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비영리민간조직이다. NOVA는 조사, 계몽활동, 피해자지원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각종연수와 정보제공, 전화상담 등의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다.

## 1) 미국 형법전(United States Penal Code)

미국의 성폭력에 대한 대표적인 입법으로 미국형법전의 제18편 중 제 109A장에서 성폭력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는 성폭력 유형으로 가중성학대(aggravated sexual abuse), 성학대(sexual abuse),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성학대(sexual abuse of a minor or ward), 모욕적인 성적 접촉(abusive sexual contact) 등이 있다.

## 2) 여성폭력방지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

미국 연방정부는 1994년 여성에 대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여성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폭력 범죄 억제와 시행법(Violent Crime Control Law Enforcement)의 일부로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총7편으로 구성되었으며 성폭력에 관련된 사항들은 주로 제1편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Safe Street for Women)에 규정되어 있다.<sup>57)</sup>

이 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특수연해지역(special maritime)과 미합중국 관할구역 혹은 연방교도소 어디서든 통용되는 미국 형법전의 제18편 중 제109A장이 금지하는 행위<sup>58)</sup>를 말한다. 여성폭력방지법은 1998년부터 5년동안 40개 이상의 지역에 39억불의 기금 지원을 포함한 법률(Violence Against Women Act II: VAWA II)<sup>59)</sup>과 2000년 10월 교통사고와 폭력피

57) 김엘림 외,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0, 178-181면.

58) 즉, 가중성학대(aggravated sexual abuse), 성학대(sexual abuse), 미성년자 또는 피보호자에 대한 성학대(sexual abuse of a minor or ward), 모욕적인 성적 접촉(abusive sexual contact) 등을 말한다.

59) 피해자에 대한 지원, 쉼터의 지원, 성폭력 및 폭력근절을 위한 센터의 지원, 판사, 사회복지사, 기타 관련인들에 대한 교육지원, 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가정폭력과 성폭

해자 보호법(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 of 2000)을 제정하였다.

### 3) 강간피해자 보호법(Rape Shield Law)

미국은 1960년대 이후 성폭력 피해자를 재판절차상에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1974년 미시간주가 최초로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제정한 이후, 대부분의 주에서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증인 신문시에 사건의 외적인 사항 특히, 피해자의 과거 성력에 관한 질문으로 배심원 등에게 편견을 주는 것을 방지하였다.

### 4) 성범죄자 등록법

미국은 1994년 「폭력범죄 통제 및 법집행 법률(Violent Crime Control and Law Enforcement Act)」을 제정하였다.<sup>60)</sup> 이 법률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범죄자 등록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미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으로써 미국의 대다수 주의 법집행기관에 성범죄자 등록법 제정을 촉진시켰다.

이 성범죄자 등록법은 성범죄의 재범을 막고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주별 등록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뉴저지 주의 매건법(Megan's Law)이 있는데, 이 법은 적극적인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해당지역 사

력의 연쇄고리를 끊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학 내에서 여성대상의 폭력 범죄에 대한 고지요구 등 12개 항목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60) 1996년 7월 개정하였는데, 이후 개정법을 약칭 '매건법(Megan's Law)라고 한다.

회에서 시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성범죄 전과자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준다.<sup>61)</sup>

## 다. 미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미국 연방정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항하는 주와 각 지역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연방법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995년 3월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여성폭력방지실(Violence Against Women Office)을 두고 연방, 다른 기관과 주 정부, 외부단체, 의회와의 접촉과 조정을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1995년 7월에는 공중보고 피해자권리, 사회서비스 시설, 고등교육 등 각 분야에 전문가와 경찰, 성직자 46명으로 구성된 여성폭력에 대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on Violence Against Women)를 설립했다. 이 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해결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며, 여성폭력방지법의 이행에 대해 연방정부에 자문을 하며, 법집행과 건강관리 기관, 공사부문, 연방과 주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피하고 있다.<sup>62)</sup>

이외에도 미국의 각주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로스엔젤리스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는 1971년부터 강간 및 구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 폭력방지위원회는 자기방어 교육, 병원, 경찰 및 기타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3세부터 19세까지의 아이들에 대상으로 야는 사람에 의한 폭행 및 강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63)</sup>

필라델피아 시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반에 피해자 지원관이 지정되어

61) 서영주,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93면.

62) 김엘림 외, 전계서, 192면; 최유진, 전계논문, 42면 참조.

63) 윤은주, 전계논문, 43면.

모든 신청서를 점검하고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며, 지원기관 및 대학의 강간 피해자 처우프로그램 등에 소개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 방지를 위한 지역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애틀 시경찰에서는 수사 부문과 함께 활동하는 피해자 지원부문을 설립하여 이곳에 소속된 피해자 증인지원관(Victim Witness Advocate)이 진술청취시의 입회, 형사절차의 교시, 검사와의 연락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sup>64)</sup>

## 2. 영국

### 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영국의 피해자 지원조직은 구미 선진국 중에서 피해자 정책에 관해 유럽의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되고 있다.

영국경찰은 1973년 VS(Victim Support)<sup>65)</sup>의 발족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이후의 각 지역의 VS설립에 있어서도 각 지역의 경찰은 많은 공헌을 했으며 VS의 운영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찰단계에서도 피해자 처우의 방안 개선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론의 요청과 다양한 연구성과에 의해 피해자는 사건의 담당자로서 경의롭고 배려된 처우를 받을 것과 사건수사의 진행과정 및 공판의

64)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72-73면.

65) 영국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활동을 시작하였다. VS는 피해자 지원센터의 통괄 본부의 역할을 하고 피해자 지원의 메뉴얼 작성과 자원봉사자 연수를 행하며 각 지방지국에 대한 조직적인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VS는 1만 5천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으며, 1997년도 회계연도에 있어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피해자, 12만명의 증인(피해자를 포함)에 대해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지부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균등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피해자 지원조직이 영국전역으로 확대되어 1979년에 지역 활동을 통괄하는 전국피해자 지원계획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Victims Support: VS)가 자선법인으로 등록되어 전국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결과에 이르기까지 정보의 제공에 대한 요청이 높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초부터 경찰이 직접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성범죄, 아동학대, 가정내 폭력 등 특별한 처우를 요하는 피해자에 대한 처우의 개선, 특별 수사반의 설치, 훈련의 개선 등이 각지의 경찰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헌장(Victim's Charter)의 제정에 의해 각 경찰은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활동을 강화시켰다. 또한 많은 경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경찰활동의 최우선 사항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sup>66)</sup>

## 나.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 1) 성범죄법(Sex Offences Act)

영국의 성범죄법은 1956년 제정되어 2000년까지 8차례의 개정을 거쳐 왔는데 주로 강간, 성매매, 성매매 알선 및 이와 유사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정리 통합한 법률로서 성범죄의 규제를 기본으로 한 입법이다. 특히, 1993년의 개정에서는 14세 미만 남성의 성교불능이라는 형법의 추정을 폐지했으며, 1997년 개정 때에는 성범죄에 관계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증거자료는 검찰관이 피고인에게 직접 개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sup>67)</sup>

### 2) 성폭력범죄자법(Sex Offenders Act)

66) 송기호·강경래, 전거서, 103-104면.

67) 윤덕경 외, 미성년 여성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2, 191면.

성폭력범죄자법은 1996년 12월 제정되고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성범죄를 범한 범죄자가 형의 선고 또는 출소 이후 14일 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이후 14일 이내에 경찰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신고하여 등록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범죄자의 분류에 따라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다.<sup>68)</sup>

### 3)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법(Protection from Harassment Act)

1997년 이 법은 스토키(Stalker)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희롱(Harassment)이라는 불법행위를 신설하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폭력이 행사될 것 같은 두려움을 주는 행동을 2회 이상하게 되면 가해자는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무제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sup>69)</sup>

## 다. 영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영국에서는 여성폭력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1997년 노동당의 여성문제에 관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졌고, 여성폭력의 문제를 두 여성문제 담당장관과 여성청에서 1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여성청의 조직에서 여성폭력을 담당하는 곳은 Violence Against Women Team이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여성에 관한 모든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있으며 특히, 강간, 스토키 범죄, 가정폭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폭력통합

68) 서영주,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97-98면 참조.

69) 서영주, 상계논문, 98면.

센터는 피해여성들에게 One-Step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서비스에서는 의료검지, 상담 등이 있으며, 피해여성이 원할 경우 경찰과 대면하여 증거를 제시할 기회가 제공된다. 의사, 상담원, 경찰이 함께 공조하여 강간을 포함한 기타 성폭력 피해자가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증거를 수집·조사하고 법적 대응을 원하는 피해자의 소송준비를 지원하고, 성병감염 여부를 위한 조사 및 치료를 제공한다.<sup>70)</sup>

1983년 영국 내무부는 모든 경찰이 성폭력 범죄 수사에 있어서 적절한 강간사건에 대한 수사의 추진, 피해자에 대한 진찰의 신속한 실시, 여성 경찰관의 활용 등에 대해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런던 경찰청은 1984년 강간 사건 수사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경찰관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의 개선, 강간 피해자 전용의 진술청취실을 설치하였으며, 진술청취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성별의 수사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피해 신고시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가 교부되고 1984년부터 강간 피해자에 대해 Chaperone이라는 성폭력범죄피해자 대책전문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강간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별개의 강간 피해자 전용의 진술청취실(Rape Suite)이 있으며 의사의 진단 등 신체 검사를 위한 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다.<sup>71)</sup>

### 3. 일본

#### 가.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70) 광동원,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8-49면.

71) 최유진, 전개논문, 37-38면 참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지원은 범죄로 인해 발생한 범죄피해자의 손실을 원상에 가깝게 복구해주는 일일 것이다. 일본은 이를 「범죄피해자등 급부금 지급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범죄피해자지원법이라고 한다)」 및 「범죄 피해 재산 등에 의한 피해회복 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피해회복급부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한 급부금 지급으로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범죄피해자 대책은 1970년대에 피해자보상제도 입법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74년 미쓰비시 중공 빌딩 폭파사건을 계기로 범죄 피해자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여, 1980년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 살인이나 상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해 불의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생긴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급부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급부제도」가 마련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시작되었다.<sup>72)</sup>

그 후 경찰청에서는 1991년 「범죄피해급부제도 발족 10주년 심포지엄」을 계기로 경찰의 피해자 대책이 검토되어, 1995년에 실시된 범죄피해구원기금의 「경찰의 피해자 대책에 관한 연구회」등을 통해 「피해자대책요강」이 책정되었다.<sup>73)</sup> 또한 동년 5월부터 경찰청을 시작으로 각 시도부현의 경찰서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여 피해자 지원대책을 체계화하고 있다.<sup>74)</sup>

더불어 1995년에는 「미토피해자구조센터」와 「오사카 YWCA 피해자 상담실」, 1998년 5월에는 민간지원단체의 연합체인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범죄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72) 이천현,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학 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4, 258면.

73) 송기오·강경래, 전계서, 140-141면 참조.

74) 이천현, 전계논문, 257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홍보, 개발활동과 각지에서 지원조직 설립의 추진, 지원 스태프의 교육과 연수, 피해자 권리옹호를 위한 법정비와 시책을 확충하는 활동, 피해자 유족 자조그룹의 지원과 연계 활동을 하였다. 현재 「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는 지원책임토위원회, 연수위원회, 자조그룹 활동지원책 위원회, 자원활동 관리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sup>75)</sup> 2003년 10월 3일을 「피해자 지원의 날」로 정하는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sup>76)</sup> 또한 2004년 12월에 범죄피해자등기본법을 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나.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 1) 형법

일본 형법에 있어 성폭력 관련 조항은 강제의설죄와 강간죄가 있다. 강제의설죄의 구성요건은 13세 이상의 남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설행위를 한자로 6월 이상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남녀에 대한 외설행위를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176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이상의 부녀를 간음한 자로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도 이와 같다(형법 제177조).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 한정하고 있고, 강간죄, 강제의설죄를 친고죄로 하여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만 사법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77)</sup>

75) <http://www.kcvc.net/>

76) 이권효, 대구, 경북, 구미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동아일보, 2003. 9. 7일자.

77) 김엘림 외, 전게서, 224면.

## 2) 스토킹처벌법

일본은 2000년 5월 18일 「스토킹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스토킹 규제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대상은 ‘따라다니기 등’ 과 ‘스토킹 행위’ 이며, 스토킹 행위 등을 처벌하는 등 필요한 규제를 행하는 것과 피해자에 원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이 빠져 있으며, 이 경우 주로 명예훼손죄 또는 협박죄를 적용하여 해결하고 있다.<sup>78)</sup>

### 다. 일본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일본 경찰은 범죄피해자등급부금지급제도를 발족시키고, 같은 해 별도의 재단법인 범죄피해구원기금을 설립시키는 등 피해자 원조를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이들 제도는 나름대로 피해자 원조면에서 커다란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내부적으로 이렇다 할 제도적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였다. 범죄피해자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일반의 이해가 확산되고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경찰청은 1996년 2월 피해자대책 요강을 제정하여 전 경찰에 하달하고 같은 해 5월 경찰청장관 관방급여후생과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함으로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sup>79)</sup>

일본 경찰은 범죄발생 후 최초로 피해자에 접하게 되고 현장조치, 사

78) 서영주, 전제논문, 114면.

79) <http://www.npa.go.jp/>

건수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나 분노를 피부로 느끼는 것이 가능한 가장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경찰이라는 인식 아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피해 상황의 해소, 회복 등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시책으로 첫째,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둘째, 상담 및 카운슬링 체제의 정비, 셋째,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부담 경감, 넷째, 피해자의 안전확보 등을 설정하고서 피해자 특성에 부응하는 피해자 보호시책을 펴고 있으며,<sup>80)</sup> 피해자들은 성범죄 피해자, 소년범죄 피해자, 악질상범 피해자, 폭력단범죄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 배우자의 폭력사안이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으로 유형화하여 대처하고 있다.<sup>81)</sup>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는 성폭력과 상담전화 ‘성범죄 피해자 상담코너’ 등의 성폭력 피해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여성 경찰관이 상담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 범죄 발생상황 등을 감안하여 ‘여성상담 파출소’를 지정하고 여성경찰관<sup>82)</sup>이 성폭력 등에 대한 상담이나 피해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이 파출소에서는 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의 시선이나 방음을 배려한 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sup>83)</sup>

또한 성폭력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성별의 경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증거를

80) 田村正博, 日本における 警察の 犯罪被害者対策 その 推移と 特徴, 警察政策研究 第7号, 警察大學校 警察政策研究 センター, 2003, 120面.

81) 警察廳, 平成14年 警察白書, 東京: 警察廳編, 2002, 339-341面 參照; 윤은주, 전계논문, 48-49면 參照.

82) 여성상담 파출소의 여성경찰관은 ①내방이나 전화 등에 의한 여성의 상담에 응하기 ②상담자의 요청에 따른 가정방문 ③상담자의 거주지 주변의 순찰 등을 하고 있다.

83) 이 밖에도 열차내에서의 치안 등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철도경찰대 여성피해상담소’를 마련하고 있으며 치안 등의 다발시나 다발일시 등을 고려하여 단속강화월간이나 경호승차강화일 등을 설정하여 성범죄 등의 방지, 피의자의 검거를 도모하고 있다.

채취할 때 피해 직후의 쇼크나 수치심으로 부담을 느끼는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채취요령을 정하고 채취에 필요한 용구, 갈아입을 옷 등을 비치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진단, 치료 및 증거 채취나 여성 의사에 의한 진단 등을 하기 위하여 신부인과 의사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휴하고 강화하고 있다.<sup>84)</sup>

## 제2절 우리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보호 실태

### 1. 경찰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현황

2007년 한 해 동안 성폭력 범죄는 15,325건이 발생하여 2006년 15,326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청소년들의 집단 성폭행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는 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경찰은 범죄 다발시간이 새벽 및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대설치 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sup>85)</sup>

성폭력은 다른 범죄보다도 암수율이 높은 범죄이다. 1991년 Rochman은 피해 여성의 50%가 친구나 가족에게 절대로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고 50명중 한 사람만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처럼 성폭력 신고율이 워낙 낮아서 범죄피해의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는 주 피해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피해를 밝히게 될 경우 입게 될 사회적 압박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성적 피해와 성적 희생을 신고하지

84) 최유진, 전계논문, 46면 참조.

85)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93면 참조.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대여성·아동성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피해자를 보고하고자 2002년 1월 17일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기획계, 여성계, 청소년계 등으로 구성된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였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성·가정폭력 등 대여성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피해여성·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찰청 및 16개 지방경찰청에 교수·상담치료사·의사, 변호사, NGO 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여성·아동대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긴급구호를 위한 경적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사건 접수, 현장 조치 및 조사시 경찰관이 알아야 할 대여성·아동범죄의 특성 및 유의 사항을 수록한 ‘대여성·아동범죄 실무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여 일선 경찰서관서에 배포하였다. 또한 여성범죄 담당 경찰관의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수사보안연수소에 「여성폭력예방 수사과정」, 경찰종합학교에 「대여성범죄 수사실무과정」을 통해 대여성·아동범죄 예방 및 전문수사기법을 교육하였다.

특히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각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 ‘성매매 전담반’을 신설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으며 2006년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자 ‘아동성폭력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sup>86)</sup>

그리고 2003년 12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진술녹화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한 후, 2006년 10월 27일 법률의 개정으로 진술녹화의 의무대상이 16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밀실 수사를 없애고,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인권을 보호한

86) 2007년에는 대여성·아동범죄사범, 2,462건, 13,146명을 검거하여 144명을 구속하고 13,002명을 불구속하였다.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94-95면 참조.

다는 취지로 일선 경찰서의 진술녹화실이 만들어졌다. 2007년 12월 전국 지방경찰청, 경찰서, ONE-STOP 센터 등 269개소에 진술녹화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sup>87)</sup> 이처럼 현재 우리 경찰은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들이 불안감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 2. 인권보호센터와 여성상담실 운영

경찰청은 2005년 인권보호를 더욱 확고한 경찰의 핵심가치로 정착시키고자 기존의 「범죄대책실」<sup>88)</sup>을 「인권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 센터의 목적은 경찰의 인권보호 활동을 수사 분야 뿐 아니라 경찰 업무의 전 분야로 확장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최우선 목표로 ‘인권보장을 통한 최상의 치안서비스 구현’으로 정하고 ‘인권보호경찰직무준칙’을 제정하여 경찰의 목표수리, 정책결정·집행, 피드백의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를 기준으로 하게 하였다.<sup>89)</sup>

87) 2007년에는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총1,571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복 출석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일반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청소년 사범·성매매·청소년 성매매 등 타 범죄의 경우에도 총 7,997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하여 일반 피해자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95-96면 참조.

88) 범죄대책실은 2004. 6. 7 범죄피해자가 이종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며,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형사절차상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찰청 수사국내에 발족되었다. 범죄피해자 대책실은 경찰의 범죄피해자의 대책에 관한 전담 기구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보호·기금운영·법령정비 등 일정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각 기능의 피해자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여 경찰의 피해자 보호역할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추진체로서 기존의 전통적 경찰활동인 범인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피해자 중심의 경찰시스템 변화 등 패러다임 전환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주상, 한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54-55면.

89) 경찰청, 인권경찰! 혁신의 시작입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2005, 14-15면 참조.

또한 경찰은 여성범죄와 관련하여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1996년부터 전국의 경찰관서에 여성상담실을 설치해 대여성·아동범죄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성상담실이라 함은 성폭력, 가정폭력, 원조교제, 미성년자 매매춘 등 각종 여성범죄와 관련해 여성 피해자는 물론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거부감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상담·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 내용은 비밀에 부쳐지며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 3. 경찰의 정보제공

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자기 사건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지 못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5월에는 범죄수사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과거 고소·고발에 한정했던 수사상황 통지제도를 확대하여 인지사건에 대해서도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수사진행사항, 피의자 검거, 처분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통지방법은 우편 뿐만 아니라 E-mail, 휴대폰 문자서비스, 전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SMS 자동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를 활용한 것으로 수사단계별로 사건진행상황을 피해자 핸드폰에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상급기관에서 일선 수사관들의 중간통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요통지 내용으로는 사건이 배당된 경찰관의 성

명 및 사건접수번호, 피의자 검거 사실 등 수사과정의 변경사항, 타 관서 또는 타 경찰관으로 사건 이송여부, 사건 종결시 송치일자 및 종결사유 등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SMS 통지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수사행정의 신뢰·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우편통지에 비해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절감과 경찰관들의 서류작업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sup>90)</sup>

또한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부서나 민원실에 ‘피해자용 안내서’를 제작·비치하여 조사관이 적극적으로 배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종 형사절차, 피해자지원제도, 상담·의료기관, 조사관 연락처 등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sup>91)</sup>

#### 4. 경찰 운영상의 프로그램

경찰 운영상의 프로그램으로는 국민편의 위주의 출석요구제도와 피해자 신문시 타인 및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는 것, 경찰의 인권 인프라 확충 등이 있다. 첫째, 국민편의 위주의 출석요구제도는 출석요구서 발부 시, 피의자의 체포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출석요구 일시를 특정하지 않고 3일간의 여유를 주어 그 중 편리한 일시를 선택하여 조사 담당자와 가부를 전화로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다른 사건 관계인과 중복되어 장시간 대기하거나 조사도 없이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개인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연락하고, 부득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할 때에는 봉합우편을 이용하며, 제3자를 통한 출석요구의 경우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환사유를 고지하지 않으며,

90) [www.police.go.kr](http://www.police.go.kr) 참조

91) 최유진, 전계논문, 69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sup>92)</sup>

둘째로 피해자 신문시 타인 및 변호사의 동석을 허용여부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낮은 수사기관에서 단독으로 범죄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해야 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 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주변의 친근한 자가 피해자 신문에 동석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부담은 상당히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분노를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자의 동석을 허용하고 있다.<sup>93)</sup> 더불어 변호인의 동석권은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부조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경찰의 인권 인프라 확충으로써 경찰은 인권존중의 경찰상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5년 인권기본조항인 헌법 제10조<sup>94)</sup>의 실현을 위한 4대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경찰활동의 「뉴 패러다임」을 설정하였을 뿐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찰행정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특히 인권보호를 위한 4대 실천과제로 ①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환경 쇄신 ②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③사건관계인 신분노출 등 2차 인권침해 방지 ④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을 설정하여 종합추진한 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인권을 중시하는 직무풍토가 조성되었다.<sup>95)</sup>

## 5. 2차 피해방지 시스템

92) 경찰청, 여성범죄수사요원 길잡이, 경찰청, 2003, 12면.

93)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 안내책자, 경찰청, 2004, 3면.

9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95)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22면.

2차 피해라 함은 피해 사건인 1차 피해로 인해 생기는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최초의 피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지는 것으로 즉, 수사기관의 대응이나 잘못된 보도, 주위사람들의 배려 없는 말 한마디나 행동,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자원봉사자에게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대다수의 2차 피해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이다. 아직도 사회전반에 남아 있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만을 우선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배려나 처우는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진술녹화제, 화상대질조사실 운영 등이 있다.

첫째로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는 경찰청이 충격적인 범죄피해를 당하고 여러 병원과 경찰관서를 전전하며, 2중·3중의 고통을 받던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5년 8월 31일 경찰 병원에 「ONE-STOP 지원센터」를 최초로 개소하였다. 이로써 경찰청의 수사·상담지원, 병원의 의료지원, 법률지원단의 무료변론 등이 통합된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 여성·학교폭력 피해자들이 24시간 무료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96)</sup>

「ONE-STOP 지원센터」는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 및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

96) 경찰청은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 12월 22일 부산의료원에 「ONE-STOP 지원센터」설치를 시작으로 경북, 울산, 강원, 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 센터를 설치하였고, 2007년 9월 18일에는 경기북부지역(의정부 병원)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다.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98면 참조.

실을 설치하였고 피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 및 침대와 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을 구비하였다. 이 밖에도 전문 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구조 등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sup>97)</sup>

둘째, 진술녹화제 시스템으로 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복출석과 진술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감수해 왔다. 특히 아동의 특성상 반복조사를 할 경우 일관성 있는 진술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조사과정에서 진술녹화제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sup>98)</sup>

조사과정에서 진술녹화의 실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즉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함에 있어서 이를 영상물로 녹화하여 두면 피해자 소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증거동의만 있으면 증거물로 제출되어 피해자가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고도 법관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sup>99)</sup>

셋째, 화상대질조사실을 통한 피해자 보호 시스템으로 이는 전자식 영상장비를 활용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간 서로 대면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조사시스템이다. 강력범죄 등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

97) 2007년 한 해 동안 ONE-STOP 지원센터는 9,352명의 성폭력 등 피해자들에게 상담, 14,546건, 진료 6,229건, 증거채취 2,117건, 진술녹화 1,198건, 피해자조서 작성 4,146건 등 총 28,236건을 지원하였다. 특히 일반 성폭력상담소의 고소·고발률이 10%전후(2002 - 2006년, 여성가족부 통계)임에 비해 2007년 ONE-STOP 지원센터를 방문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76.9%가 고소를 제기, 그 동안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반복진술과 신분노출의 부담으로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던 피해자들이 ONE-STOP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는 등 여성·아동 범죄피해자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들로부터 사회복귀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99면.

98) 최은아, 兒童性暴力 被害者에 대한 警察의 保護方案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0면.

99) 윤상민,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47-48면 참조.

변을 하게되면 심리적으로 공포·흥분·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는 상황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상대질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화상대질조사 시스템의 운영은 대질조사라는 수사의 목적도 달성하고 가해자의 직접대면으로 인한 2차 피해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

화상대질 조사실은 우선 피의자와 분리된 장소에서 편안한 상태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줌카메라·영상음향장치·조명조절장치 등을 설치하여 화상 및 음성 송수신을 통한 범인식별 및 대질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sup>100)</sup>

이 이외에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101)</sup>

첫째, 최초로 만나는 수사기관이나 피해자 지원센터 실무자는 피해자에게 안전과 안정감을 주어야 하며,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수사절차와 사법절차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둘째, 보도 관계자는 흥미본위의 기사가 아닌 사실 확인을 한 후에 보도하도록 하며 또한 피해자가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주위사람들과 친척, 친구 등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피해사실에 대해 이야기하면 다소 힘든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어야 한다. 넷째, 자원봉사자는 피해자에 대해 무조건 동정하거나 구원자적인 역할을 하지 말고 오직 지원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항상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반 시민에 대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홍보, 계몽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상처받아 고립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피해

100) 박준영, 전개논문, 107-108면.

101) <http://www.kcvc.net/> 참조.

자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의 상처와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범죄피해로 인한 2차 피해는 감소될 것이다. 그리고 2차 피해예방과 해결방법 중의 하나는 피해자와 직접 만나는 실무자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전문적인 교육과 홍보교육을 위한 시간과 기회의 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6.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한국에서는 1980년대 말까지도 성폭력 범죄피해자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이 전혀 인식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87년 헌법에서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입법적 성과를 이룩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 및 피해자의 형사절차 관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1990년대 들어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여 협조체계를 이루는 단체는 한국성폭력 상담소<sup>102)</sup>, 서울여성의 전화<sup>103)</sup>, 한국여성의 전화연합<sup>104)</sup>,

102)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 4월 개소 이래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지원 활동과 성폭력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인간중심적인 성문화의 정착과 여성의 인권 회복을 위한 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성폭력 피해자 상담, 성차별적 성문화 바꾸기, 성폭력관련 법·정책 감시 및 제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39,800건(60,099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1,557건(79.3%)이었다. 2007년에는 총 2,101건(3,330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1,910회(57.3%), 메일상담 1,080회(32.4%), 면접 338회(10.2%), 기타 2회(0.1%)였다. 전년 대비 전화상담비율은 0.2%, 면접상담은 1.0% 감소한 대신 인터넷상담은 1.6% 증가하였다. 성폭력 상담은 1,948건(92.7%)으로 기타 상담의 비율을 줄이고, 성폭력 상담에 보다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상담건수는 2006년 대비 916회 감소하였으나, 2번 이상 상담한 지속상담 비율이 2006년 58%였던 데에 비해, 2007년의 지속상담비율은 63%로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정보전달 위주의 1회성 상담보다, 지속 상담과 지속 사건지원에 집중 지원하였음을 보여준다. 성폭력 상담의 내담자 유형의 경우 본인이 상담한 경우가 2,014회(63.8%), 대리인이 상담한 경우가 1,086회(34.4%)를 차지하였다. <http://www.sisters.or.kr/> 참조.

103) 한국 여성의 전화는 1983에 창립된 여성인권운동 단체로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정치, 경제,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KVVC)<sup>105)</sup>, 여성긴급전화 1336<sup>106)</sup> 등이 대표적인 협조체계를 이루는 조직이다.

이 외에도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옹호를 주된 활동 목표로 하는 민간연계조직들이 다양하게 있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법무부 등에서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거나 재정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이러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정될 필요가 있다. 즉 피해자들은 폭력의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위기 상담전화는 물론 상담소, 일시보호시설(피해자보호시설), 경찰, 검찰, 법률구조기관, 의료기관 등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 여성들을 위한 상담소나 보호시설들이 예산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관련기관간의 연계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sup>107)</sup>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하며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http://womansrights.org/> 참조.

104)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은 1983년 6월 창립되었으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나아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성평등을 이룩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땅의 평화와 민주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인권운동 단체이다. <http://www.hotline.or.kr/> 참조.

105) <http://www.kvvc.net/> 참조.

106) 1998년 1월 1일 개통되고, 2001년 7월 1일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에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하여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여성 긴급전화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긴급전화상담, 전화통화에 의한 초기상담, 긴급보호를 실시하며, 전문상담기관, 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검·경찰, 행정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원스톱 보호망으로 전국 어디서나 도움 받을 수 있다. [http://seoul1366.or.kr/sub01/body1\\_1.php](http://seoul1366.or.kr/sub01/body1_1.php)

107) 최유진, 전계논문, 78면 참조.

## 제3절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

### 1. 성폭력 피해자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성폭력 2차 피해라 함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 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등으로 인해 상처치유나 증거채취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 언론에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노출시키는 경우 등이 있다. 피해자에게 전학을 강요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전학을 거부하는 등 학교 내, 회사 및 직장관계자 등에 의한 2차 피해도 심각하다.

수사 공판 담당자의 경우 성폭력 사건을 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수사과정에서 저항 여부, 옷차림과 음주 여부, 이전의 성력, 직업, 평판 등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실을 조사한다.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를 폐기처분한 뒤 사건을 축소, 조작하는 행태도 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의 '성력 기타 사생활' 집중 추궁도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수사과정의 신변보호와 증거확보 지원 제도 역시 미흡하다.<sup>108)</sup>

특히, 현재 아동성폭력은 증가하지만 신고율은 10% 미만 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경찰과 검찰로 이어지는 수사과정에서 겪게 되는 '2차 피해'가 이러한 현실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성폭력범죄에 대해 가해자중심의 통념을 가진 사회에서 수사를 맡은 이들이 아동의 발달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108) 김홍주선, 아동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오마이뉴스, 2008. 8. 12 일자.

이해 역시 부족한 탓에 ‘피해자만 죽어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검찰청 예규와 법무부 훈령, 경찰청 훈령 등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게 추가 고통을 가하지 않고 피해자 소환을 최소화해야 하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 대면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선 수사 과정에서는 이런 규정이 거의 유명무실해 성폭력 피해 아동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의 수사공판 체계는 ‘성인’ 성폭력 피해자와 범죄자를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이것만 따를 경우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sup>109)</sup>

경찰은 이러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재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형사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존중해 주기위해서 경찰청 수사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시 초기부터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서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 및 활동부족으로 아직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현 실정이다. 따라서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의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할 것이며, 성폭력에 대한 경찰관의 잘못된 인식을 교육 등을 통하여 전환시키고,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2. 경찰의 운영상 문제점

범죄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피해와 충격을 받아 누군가의 도움을 긴급하게 바라게 되며, 범죄로 인한 극심한 공포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

109) 박희정,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8. 8. 12일자; <http://www.ildaro.com/>.

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경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무시하고 오직 사건해결에만 전념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어투와 정신적 상처를 입어 수사기관에 의한 제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가 종종 발생되어 문제시 되고 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주의로 인하여 범죄피해자 및 증인의 성명, 주소, 사진 등 인적 사항이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찰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이러한 부주의로 인하여 보복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증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sup>110)</sup>

이와 관련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2008년 6월 대법원의 판례는 담당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 등 위법한 직무집행을 원인으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고,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위반 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범죄수사를 함에 있어 경찰관으로서 의당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나이 어린 학생인 경우에는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심리적·신체적 고통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

110) 윤은주, 전계논문, 71-72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주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고 판결이유를 밝혔다.<sup>111)</sup>

범죄의 수사 및 조사에 따른 피해자와 증인의 출석과 진술은 그에 따른 시간의 소비와 비용의 지출이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다. 문제는 불필요한 출석과 진술 부담의 증가이다. 수사담당자인 경찰관의 부재나 조사의 지연으로 반복되는 소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 또는 증인을 경찰서 내에서 장시간 대기시키는 무관심이 발생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및 증인의 출석은 직장에서의 결근 또는 실적, 휴업 등으로 인한 직업·영업상 불이익이 초래하게 된다. 특히 사유를 불문하고 사법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경원시 하는 우리의 사회풍토상 이러한 피해는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의미의 손실은 사건의 성격을 불문하고 쉽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배려와 주의에 의하여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절차의 진행상황을 가르쳐 주지 않거나 조사 받는 조사실 환경의 낙후로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sup>112)</sup>

111)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 다 64365 판결.

112) 윤은주, 전개논문, 72면.

### 3.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관 제도

법무부는 2006년 「성폭력범죄 근절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의견서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관계인 조사 및 증거수집 등 수사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수사관을 지정하고 의무적으로 수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113)</sup> 그러나 현재 성폭력 사건을 전담할 조사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경찰관이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성경찰관은 매년 총원인력의 20-30%를 선발하고 있는데 2007년 12월말 전체 경찰관 중 5.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경찰관의 업무가 과중되는 형태가 되고 있어 인력확충이 시급하다. 따라서 경찰청은 앞으로 여성경찰관의 비율을 2014년까지 10%로 상향시켜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고자 하였다.<sup>114)</sup> 더불어 여성 경찰관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관 제도의 실효성도 이루질 것이다.<sup>115)</sup>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전담조사제도<sup>116)</sup> 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

113) 법무부,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견서, 2006, 3-4면.

114)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340면.

115)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성폭력 전담수사관으로 여성경찰관이 적합한 듯 보이나 몇몇 실무관들은 오히려 성폭력 전담수사관으로 여성이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히 같은 여자라서 더 함부로 말과 질문을 하거나, 여성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배려하지 않기도 한다. 이미정, 전개논문, 76-77면.

1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10.27].

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전담제는 1~2년 이내에 수사담당자의 보직이 바뀔 뿐만 아니라 수사와 공판검사가 다르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담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성폭력 범죄 전담수사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의 전문수사관이 1~2년 간격의 순환보직이 아니라, 10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하며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의 활용상 문제점

현재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진술녹화제 도입, 이동식피해자 조사실 운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SMS자동통지시스템 등 여러 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경찰이 오랜 변화 끝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활용이 미흡한 경우가 있다.<sup>117)</sup> 특히 여기에서 ONE-STOP 지원센터 이용의 문제와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ONE-STOP 지원센터 이용의 문제로 경찰은 충격적인 범죄피해를 당하고 여러 병원과 경찰관서를 전전하며, 2중·3중의 고통을 받던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2005년 경찰병원에 「ONE-STOP 지원센터」를

117) 최유진, 전계논문, 85면.

개소한 것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하였다. 이 센터의 핵심적인 가치는 여성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무료의 통합적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가 한 장소에서 의료, 상담, 증거채취 및 치료, 수사,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사 및 증거채취를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을 설치하였고, 피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 및 침대와 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을 구비함으로써 피해자가 겪게되는 2차피해를 최소화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118)</sup>

그러나 경찰병원내에 설치된 「ONE-STOP 지원센터」를 이용한 피해자와의 상담 결과 피해자가 센터 방문시 주위의 시선으로 겪게되는 불편한 점을 호소하였다. 즉, 병원 내 센터의 위치와 목적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출입하는 피해자는 불특정다수에게 범죄피해사실을 간접적으로 노출하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서비스에 대해 알고도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거나 상담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말을 듣는 등 피해자가 대면하는 사람들에 의한 2차 피해를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의 구성요건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측과 개인적으로 만나 사후문제를 해결하라고 한다거나 피해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권고는 피해자에게 불쾌감, 수치심, 죄책감을 느껴 피해자에게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는 경찰이 이 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피해자가 경찰기관을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sup>119)</sup>

118)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98-99면 참조.

119) 최유진, 전개논문, 86면.

둘째,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 운영에 관한 문제점으로 이 조사실은 성폭력 등 여성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출입할 때 피해자 신분 노출 및 보복 등의 추가피해를 우려해 경찰서 안에서 조사 받는 것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이동 상담 및 조사, 의료기관 후송 등의 활동을 감안해 도입된 제도이다. 특히 신원보안이 요구되는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조사를 함에 따라 인권침해의 우려와 경찰관서 출석에 따른 심리적 부담 및 가해자측 또는 제3자와의 예상치 못한 대면에 따른 보복 위협 및 2차 피해 우려로 사건 발생 후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조사를 하여 출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사실 운영의 목적이다. 이 조사실 내부에는 진술녹화용 장비와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간이침대와 구급의약품 보관함이 비치되어 있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다.

그러나 이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은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이동식 피해자 조사실 차량은 주로 형사들의 매복, 잠복 차량을 개조하여 만든 것으로 평상시에는 형사들의 업무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관리부서도 형사과로 되어 있어서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다른 업무로 사용되는 일이 잦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차량의 내부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진술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피해 여성의 이동식 조사실 이용을 꺼리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sup>120)</sup>

## 5. 민간기관과의 협조상 문제점

피해자 대책의 근간은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기관단체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정책상

120) 오마이뉴스, 2006. 2. 25일자.

구상은 기존의 민간조직들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적 역량과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단체가 범죄피해자 문제에 관한 비전문가에 의해 조직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상담원을 확보한 곳도 극히 적은 현실에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급작스럽게 피해자 상담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다.<sup>121)</sup>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민간단체들과 형사사법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 전체 업무 가운데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율에 관한 자료는 불충분하지만 연계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나 실제 건수는 30%내외인 점으로 봤을 때 민간기관과의 연계업무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고 파악해 볼 수 있다. 민간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 분야로는 법률, 의료, 주거, 안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민간기관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관련 기관간의 공식적인 연계가 없다는 점, 관련 기관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기존 업무를 처리하기도 벅찬 문제 등이 있다.

또한 민간기관과의 연계할 때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경찰과 검찰은 인식부족, 권위주의적 수사태도, 가부장적인 의식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으며 전체 업무 중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업무의 비중이 낮은 부분도 연계업무의 장애요인으로 보여진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진료비, 진단서 발급문제, 전문의료진 부족 등이 지적되고, 법률구조기관도 경비, 가부장적 사고,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이 지적된다.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피해여성에 대한 이해부족 및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시설 부족, 상담소와 시설의 상호이해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sup>122)</sup>

121) 윤은주, 전개논문, 73면.

122) 박영란·황정임,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여성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2000, 206-209면.

## 제4장 성범죄 피해자에 관한 경찰의 보호방안

### 제1절 경찰의 수사활동에서의 2차피해 방지

#### 1.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

경찰은 인권경찰로의 도약을 위하여 1004 Project와 S-P-O-T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인류애로써 인권존중의 경찰상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5년 인권기본조항인 헌법 제10조의 실현을 위한 4대 실천과제를 제시하면서 경찰활동의 「뉴 패러다임」을 설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를 위하여 경찰행정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4대 실천과제로 ①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환경 쇄신 ②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 ③사건관계인 신분노출 등 2차 인권침해 방지 ④유치인 보호체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 설정하여 종합추진한 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고 인권을 중시하는 직무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추진한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1004 project의 성과를 바탕으로 진정한 인권수호자로 거듭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현장(SPOT) 중심 인권보호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인권친화적 경찰직무 시스템 구축(System), 국민참여형 감시체제 내실화(Participation), 경찰 직무현장의 인권실태 진단(Observation), 내실있는 참여형 인권 교육 실시(Training)이라는 커다란 틀을 가지고 인권시책의 현장 정착 및 인권의식의 내면화를 실시한 결과 2005-2006년도

사이에 경찰행정에 있어서 인권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현장적 용에 이르기까지의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커다란 흐름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sup>123)</sup>

경찰의 수사과정에 있어서 수사관의 언동이나 행동이 피해자의 심리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특히, 중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더욱 상처를 입기 쉽다.<sup>124)</sup>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피해자의 인격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조사의 목적달성도 중요하지만 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수사에 의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갖거나 제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sup>125)</sup>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침해는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경찰이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하거나 피해자를 가해자처럼 대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 변화이다. 즉 수사관은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와 명예에 대하여 중대한 침해를 가하는 매우 폭력적이고 비열한 범죄이며, 이것은 성관계와 다른 폭력행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또한 수사 진행과정에서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심리상태, 성폭력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성폭력 시간과 장소 등 제반사항을 편견없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임을 인식하고,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123)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22-23면 참조.

124) 김용세, 범죄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회, 1999, 136면.

125) 윤은주, 전개논문, 77면.

다음은 경찰의 성폭력 범죄 수사에 있어 현장에서 경찰의 활동, 출석 요구, 피해자 조사, 실황조사 및 검증 등 수사에 임하는 자세에 관하여 살펴보겠다.<sup>126)</sup>

첫째, 사건현장에서의 경찰활동으로 보통 경찰관은 범죄현장 임검시에는 통상, 순찰차나 제복 경찰관이 현장에 임하여 수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성범죄에서처럼 순찰차가 자택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 가능한 한 사복을 입고 일반차량으로 출동하여 범죄 피해 수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범죄 현장 도착후에는 먼저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이 먼저 본인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범죄 피해자를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피해에 관계된 범죄 등 피해자가 가능한 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이나 언론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출석요구에 있어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락처, 연락방법 등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자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시간, 장소, 담당자의 이름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시간, 장소는 가능한 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한 경우에는 경찰서 현관의 안내요원에게 미리 연락해 둬으로써 피해자가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피해자의 조사에 있어서 보통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서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기에 중요하지 않은 질문, 동일 내용을 반복 진술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워 할 만한 질문은 사건의

126) 윤은주, 전계논문, 78-79면 참조.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경찰관 개인의 흥미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질문이라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넷째, 범인을 검거하여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다양한 범죄 증거가 수집되어야 한다.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자의 자택 등에 대한 실황조사나 검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피해자로부터 협력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입회해야 할 경우에는 회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기억해야 하는 피해자의 괴로운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또한 실황조사나 검증을 실시하는 시간을 정할 때에도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일반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피해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에는 사진이나 비디오 또는 매직밀러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범인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의 의무화

현재 경찰은 효율적인 범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 사건 등 대여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 방지하고 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교수, NGO 등 전문가로 교수진을 편성, 경찰 수사연수원에 「성폭력수사 전문과정」을 신설·교육하였으며, 성폭력 범죄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해 「아동성폭력 진술녹화관 자격인증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을 제고하고 아동중심의 눈높이 조사를 위하여 아동 조사시 전문가가 참여, 진술과 행동을 분석하는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 및 행동·진술 분석제」를 수도권 4개 윈스톱

지원센터에서 시범 실시를 하였으며, 2009년부터 전국 15개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sup>127)</sup>

성폭력의 원인이 남녀의 지배관계를 인정하는 우리의 가부장적인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가부장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접했을 때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편파적 수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여성계에서는 일선 경찰교육에도 반드시 성평등 의식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오고 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는 그나마 미흡하기는 하지만 조금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성폭력의 경우는 거의 수사와 관련된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차원에서 성평등 교육이 일부 시행되고 있기는 하나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부 여성경찰관들 중심으로 조금씩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시각에 동의하고 있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여성 관련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아직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중잣대가 그대로 수용되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선 경찰관들에 대한 성평등 의식의 교육은 성폭력 관련 수사의 경우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수사할 때에도 참조되어야 한다.<sup>128)</sup>

### 3. 장애우와 아동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 수사시에 심리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성폭력특별법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가 적극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친상간

127)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96면.

128) 이미정, 전계논문, 94면; 최유진, 전계논문, 93-94면 재인용.

이나 특수강간 등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피해자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장애우와 같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나 아동 또는 어린이의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하고 전문조사실이 보장되는 등 조사환경이 아무리 개선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장애우나 아동, 어린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성폭력 전문가가 가장 편안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를 수사관이 참관하여 전문가를 통해 질문하는 방식을 이용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일방통행거울(Oneway Mirror)을 설치하여 전문가가 피해자에게 성폭력 사실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고 수사관들이 이를 밖에서 지켜보면서 이어폰으로 연결된 마이크를 통하여 전문가에게 질문내용을 말하는 방식도 고려되어야 한다.<sup>129)</sup> 또한 청각 장애우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 통역자, 시각 장애우들을 위한 보조진술원의 도움을 받는 것 이외에도 의사표현이 힘든 장애우의 경우는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원활한 진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up>130)</sup>

또한 앞으로 일반 성폭력 피해여성들에게도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제도는 확대되어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4.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범죄 피해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자신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충격을 극복할

129) 조 옥, 검찰수사상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1, 41면.

130) 장필화, 전개논문, 37면.

수 있는 전제조건이며 아울러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는 피해자가 자기의 사건 진행상황을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이후의 인격권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검사가 한정적인 결과를 통지할 뿐 형사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제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31)</sup> 그러므로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부터 시작하여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 수사 진행 상황 및 피해자를 도와주는 단체나 기관의 존재여부, 국가피해보상 제도 등 여러 가지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체포시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과 같이 성범죄 피해자에게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반 권리와 절차에 대한 정보를 수사 경찰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겠다.<sup>132)</sup>

2004년 말부터 경찰서 또는 지방검찰청이 사건처리 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SMS휴대전화 문자서비스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SMS 통지제도는 자동화된 통지체제로써 범죄피해자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과거 우편을 통한 통지방식보다 훨씬 예산이 절감되고 능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따라 수사기관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SMS 통지제도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의 방식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sup>133)</sup>

131) 김용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수사연구, 제23권, 수사연구사, 2005, 16-17면.

132) 박주상, 전개논문, 83-85면.

133) 최유진, 전개논문, 95-96면.

## 5. 경찰의 피해자 조사 및 면접기법

경찰을 형사사법 행정에 있어서 형사절차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gatekeepers)에 비유할 수 있다면 범죄의 피해자는 범죄정보를 알려주는 전달자(messengers)로 비유할 수 있다.<sup>134)</sup> 이처럼 경찰은 수사단계에서 1차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므로 피해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청에서는 성폭력 책자 및 각종 매뉴얼을 제작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여성·아동 인권보호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가 성폭력에 대한 경찰의 잘못된 인식과 일상적인 수사관행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는 매뉴얼이나 지침서들로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특성에 맞는 수사기법의 개발과 경찰관의 교육이 필요하다.<sup>135)</sup>

영국의 리버풀 대학에서는 “수사심리학센터”를 설치하여 경찰을 비롯한 수사관에게 「수사기법(investigative technique)」, 「수사에 있어서의 의사결정(detective decision making)」, 「면담조사(investigative interviewing)」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sup>136)</sup> 중국 인민공안대학은 대학원 과정에 응용심리학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세부전공으로 「경찰 심리학」과 「범죄심리 측정 기술학」을 두고서 수사심리학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심리학을 응용한 수사기법을

134) Amie R. Scheidegger, *Suitable Responses to Victimization*, in Laura J. Moriarty, op. cit., p. 18.

135) 최유진, 전개논문, 96면.

136) 김종률, 수사심리학, 학지사, 2003, 17면.

개발하여 경찰을 비롯한 수사관에게 교육하고 전문화 시키는 부분과 그 분야에 대한 연구기능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137)</sup>

## 제2절 성범죄 관련 입법론적 개선방안

### 1. 강간죄 범위의 확대

우리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객체가 부녀에 제한되고 행위가 강간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가중의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임신의 위험 때문이 아니라, 강간으로 인하여 부녀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현저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에 있다.<sup>138)</sup>

강간이라 함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간음이라 함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케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 남자가 남자를 강제로 간음한 경우, 성기와 성기의 결합이 아닌 항문 성교나 구강성교의 경우에는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이 경우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sup>139)</sup>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부녀의 정조가 아니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로 보는 한 이 같은 행위도 강간죄의 범

137)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 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89면.

138) 李在祥, 刑法各論 第4版, 博英社, 2000, 153면.

139)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는 사람의 성적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여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나 남자가 남자를 강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침해되는 것이며 또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폭행과 협박으로 억압한 채 성기가 아닌 구강이나 항문에 간음한 자도 그 침해의 중대성에 있어서는 성기에 간음한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140)</sup> 독일의 경우도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하여 강간죄의 행위태양에 간음이외에 유사한 성적 행위를 포괄하여 강간죄를 확정하였는데<sup>141)</sup> 여기에서 성기이외에 신체내부로의 성기삽입이 포괄되며, 또한 성기구를 이용한 삽입 역시 포함된다.<sup>142)</sup> 성폭조의 자유 분방화와 성폭속의 다양화, 엄연한 동성애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여성을 포함하는 모든 시민의 성적 자기의사결정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확대개편하고 간음의 의미도 확대해석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것은 또한 형법의 강간죄 규정에 의해 여성의 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성도 보호 대상이 됨을 명문화하게 됨으로써 성 형법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기하는 결과도 낳게 될 것이다.<sup>143)</sup>

이러한 흐름에 입각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죄 객체에 남자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sup>144)</sup>

## 2. 성범죄의 비친고죄 필요

140)李文姬, 性暴力犯罪의 被害者保護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91면 참조.

141) 독일 형법 제177조 제2항.

142)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인도주의 형사법과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197면.

143)李文姬, 前揭論文, 91면.

144) 김선주, 인권위 "男兒도 성폭행 피해자 포함", NEWSIS, 2007. 1. 8 일자.

2008년 11월 13일 법무부 주최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토론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만 하면 형사절차를 완전히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되고, 이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또 다른 고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심지어 수사기관이 합의를 중용해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피해자의 직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집으로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소리치고, 심지어 가해자 부모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학교로 찾아와 합의서에 서명을 받는 등 피해자로서는 다시 떠올리기 싫은 사실이 직장이나 이웃 등에게 알려져 또 다른 고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외에도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고 좋게 끝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법원은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재판을 연장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가해자의 처벌을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그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음을 확인해 피해회복과 새로운 삶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는 피해자의 욕구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친고죄 폐지가 제기되었다.<sup>145)</sup>

현재 우리의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 범죄를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친고죄와 비친고죄로 구분해 놓고 있다.<sup>146)</sup> 우리 형법이 단순강간, 단순 강제추행 등 일부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한 이유는 피해 사실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가 손상되어 오히려 피해 여성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강간·단순강제추행 등을 포함

145) <http://www.lawtimes.co.kr/>

146) 형법상 강간(제297조), 강제추행(제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제299조), 미성년자들에 대한 간음(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제304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제305조) 등의 죄는 친고제이다. 성폭력특별법상으로는 중한 범죄인 특수강간(제5조), 특수강간(제6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7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제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제8조의 2), 강간치사상(제9조) 등은 비친고죄이고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4조) 등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다.

해 모든 성폭력 범죄를 피해 여성의 고소가 없이도 검사의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비친고죄화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는 현재까지도 학자와 실무자, 기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치열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sup>147)</sup> 친고죄의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정조를 중시하고 성폭행 피해를 사실을 공론화 하기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상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친고죄 규정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성폭행 피해자 여성 대부분이 범인의 처벌보다는 개인의 명예 보호를 더 중시해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린다는 점에서 일응 타당한 면도 있다.

그러나 단순강간·단순강제추행 등 기본적인 성폭력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에서 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는 우리 형법은 단순강간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강제추행에 대해서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까지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범죄들에 대한 중한 형사처벌을 피해자 개인의 고소의사 결정에 종속시키는 것은 입법자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고, 또한 성폭력 범죄로 인해 파괴된 법질서와 시민들의 불안감을 정당한 형사처벌을 통해 회복하고 해소해야 하는 공권력의 행사 주체인 국가의 본래 임무에도 배치된다. 단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력 범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이는 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심각히 훼손되고 말 것이다.

둘째, 친고죄의 규정은 성범죄를 오히려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든다는 것이다. 정조를 중시하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성폭행의 피해자들은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되고 용서와 선처를 빌어야 할 가해자들이 오히려 강자의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다. 이는 부녀를 강간한 후

147)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친고죄 규정이 오히려 성폭력 범죄의 은폐에 기여하는 상황 및 성폭력 피해의 인지와 노출이 어려운 아동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비친고죄화 및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인권행동, <http://www.hrkorea.org/> 참조.

이를 미끼로 금품까지 뜯어내기 위해 협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sup>148)</sup> 이처럼 친고죄의 규정은 피해 여성의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를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잠재적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친고죄의 규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 여성의 보호는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개선과 사회적 보호, 지원 체계의 확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sup>149)</sup> 이러한 이유로 형법에서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비친고죄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3. 성폭력 특별법의 특별절차 규정

#### 가. 영상물 촬영에 관한 부원(不願)의사 인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sup>150)</sup>의 제21조의3(영상물의 촬영·보존 등)의 제3항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에 의하여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48) '사이비 승려' 가 도인(道人) 흉내를 내며 새벽기도 등을 위해 절을 찾아오는 여성신도들을 상대로 기 치료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성폭행(강간)하고 금품을 뜯어냈다. 정지우,道人 흉내 '사이비 승려'의 과립치 범죄행각, 파이낸셜 뉴스, 2008. 8. 14 일자.

149)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4, 38면; 이호중,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27권 2호, 1994, 60면; 서보학, 형사절차상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7권 4호, 1996, 겨울, 198면.

150)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0호.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이다.

위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은 피해자 등의 연령과 이해도에 맞추어 영상물 촬영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여기에는 ①비디오 녹화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장·단점, ②녹화된 비디오테이프를 누가 볼 것인지 ③비디오에 녹화된 영상물이 사용될 유용한 목적 등이 포함되는 것이 상당하다. 가급적 비디오 녹화에 대한 이의 표시는 미리 준비된 서면을 통해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sup>151)</sup> 그리고 누구든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조서사본의 교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21조의3의 제5항에서 「수사기관은 위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즉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증거능력이 있는데 굳이 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규정은 영상물의 사본을 교부하든지 아니면 영상물의 녹취서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의무화

151)李文姬, 前掲論文, 99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22조의3(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1항에서 「법원은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서 검사·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등 피해자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자는데 있다. 그러나 동법의 제정 당시부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 및 지침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신뢰관계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4. 공소시효의 연장

2004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한 공소시효 도과 성폭력피해 사례 592건을 분석해 보면, 가해자가 평소 아는 사람인 경우가 87.8%였으며, 이중 친족 및 친인적인 경우가 6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피해서실을 발설하기 어렵고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통제권하에 있어 현실적으로 고소 가능성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성인이 돼 독립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진행을 정지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가해자의 변호인들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형식의 증인신문으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변호사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 제3절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 1. 경찰과 민간기관 상호 연계 강화

경찰을 비롯한 관련 민간기관들은 성폭력 문제에 대하여 특히 책임의식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가 있다.

범죄 피해자에게 있어서 범죄를 당한 후에 피해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찰에의 신고, 긴급호송차량 및 병원으로의 이송, 가정 및 직장 연락, 경제적·정신적 지원, 상담제공, 신변안전 확보, 장례식 지원, 언론보도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경찰에 있어서 이상과 같은 대부분의 요구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보다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법, 행정, 의료, 언론기관나 등 피해자 대책에 관계하는 기관, 단체 등이 상호협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계기관의 상호연계 요구를 기초로 경찰 외에 검찰청, 시의 관계 부서, 변호사회, 임상심리사회 및 지역 상담기관 등에 의한 「피해지지원연락협의회」의 설립이 필요하겠으며, 이곳에서는 정보교환과 각종분과회의, 상담강습회 등의 개최를 통해 각 기관, 단체간의 상호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적절한 기관 등을 연결시켜주는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겠다.<sup>152)</sup>

수사기관 실무자들과 민간기관들은 서로 연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계는 상담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인 차원에서 비공식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연계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

152) 윤은주, 전계논문, 86-87면 참조.

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폭력피해자들의 복합적인 서비스 욕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 기관간의 연계업무를 조직 운영차원에서 업무규정으로 포함시켜 공식 업무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sup>153)</sup>

성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는 다양하고 복잡한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경찰관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sup>154)</sup>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시스템은 피해자가 초기에 접하는 신고 및 전문상담 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법률, 기타 자립지원 등을 수행하는 연계기관 등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피해자 구제라는 목표하에 일사분란하게 가동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과 지원체계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들은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직후부터 설치, 확대되어 2001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에 와서는 시설의 설치나 연계기관의 확보 등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물리적인 환경은 어느 정도 갖추었으며, 이들 서로의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sup>155)</sup>

이를 위해 경찰은 현재 일선 경찰서 단위로 지역사회와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피해자지원협의회 활성화 방안이나 법률지원서비스, 피해자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지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경찰서 단위로 구성된 행정발전위원회와 성폭력 및 가족폭력상담소, 의사, 변호사, 종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153) 최유진, 전개논문, 105면.

154) 표창원, 경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사법개혁국민연대 세미나 자료집, 2003, 40면.

155) 정봉협,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의 성과와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민우회·가족과 성상담소·한국여성의 진화연합 공편,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성폭력 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87-88면.

## 2. 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시스템 구축

영국, 미국,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이 범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적극 참여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성폭력범죄피해자와의 법정 동행, 의료지원,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시 조직적인 현장 봉사활동 등 직접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경북 김천·구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sup>156)</sup>와 대전지역에 범죄지원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는 변호사, 의사 등의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상담 및 화해중재, 직접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고, 자원봉사자 확보 및 전문가 양성, 재원 확충 등으로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56개의 범죄지원센터가 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상담 전용전화를 수사기관 또는 상담소에 설치, 이를 통하거나 또는 수사기관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지원실을 마련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 지원담당관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 사건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피해회복방법,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 등을 느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의 동행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sup>157)</sup>

156) 2003. 9. 5 설립되어, 치료·상담·경제적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하여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최초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공익단체이다.

157)李文姬, 性暴力犯罪의 被害者保護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88-89면 참조.

## 제5장 결 론

올해 4월의 혜진·예슬양 납치·살해 사건부터 대구 초등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까지 연이어 터지는 커다란 성폭력 범죄에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가슴은 안타깝고 불안하다.

법무부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2008. 5. 14.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발표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전체 범죄 증가율은 10%에 불과한 반면, 성폭력 범죄는 무려 83%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각종 성 범죄가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현재 교도소 등에 수감된 성 범죄자수도 5천명이 넘는 데, 특히 10%가 넘는 581명이 아동 성폭력 사범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성폭력 범죄자들의 95%가 10년안에 형기를 모두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또한 1년안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한지 1년안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수는 2004년 177명에서 2006년 280명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경찰은 범죄 다발시간인 새벽 및 야간에 주택가, 골목길,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였으며,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범죄 예방과 더불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하게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뒤에는 반드시 피해자 있으며, 이들 피해자들은 범죄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에 못지않은 심각한 장기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즉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절차상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또 한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반복하여 진술하게 되며, 성폭행 사실과 무관한 성경험이나 과거 경력, 직업, 평판 등을 문제 삼아 피해자는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언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정비를 위해 수사관계자의 지속적인 교육·교양을 통하여 현 우리사회의 남성중심적 성문화에 대한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2년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한 이래 날로 증가하는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각 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에 「성매매 전담반」을 신설하여 강력한 단속을 펼쳐 왔으며, 2006년 증가하는 아동 성폭력에 적극 대응하고자 「아동성폭력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 경찰관의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는 인력이 부족함에 대하여 앞서서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경찰의 적극적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도 여성 경찰관의 인력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둘째,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민간 NGO와 연계하여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전문성을 갖춘 성폭력 범죄피해자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또한 경찰의 조사시에도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절차상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장소에서 피해자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조사실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상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피

해자 조사실은 심리학적인 관점 등을 고려하여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두려움이 없이 피해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어린이 성폭력 조사」 현장에 관한 사례를 보면, 이 주 사우스 벤드에는 성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어린이를 돕는 「케이지 센터(The Casie Center)」라는 민간단체가 있는데, 이곳에는 어린이 성폭력을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이 이 단체에 와서 업무를 본다. 또한 피해 아동과 부모가 이 센터의 입구에 들어서면 아기자기한 실내장식과 각종 장난감이 가득한 방으로 이어져 마치 유치원에 온 느낌을 준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어린이에게 끔찍한 기억을 거둬 떠올려야 하는 등 2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동심리·상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또한 피해 어린이의 첫 상담과정에서부터 전문가와 경찰, 검찰이 함께 참여하여 조사 뒤 바로 기소 과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넷째, 위의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심리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 조사를 맡은 경찰관은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심리전문가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DB화해하여 이를 통해 성폭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폭력 사범을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증인신문시 신뢰관계자 동석 및 피해자 진술 비공개, 비디오 등 증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됐으나 피해자가 이러한 권리를 알지 못하거나 수사·재판 담당자의 실수로 묵과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고지사항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

부하고, 수사·재판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해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국내문]

#### 1. 단행본

- 강은영,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3.
- 경찰청, 2008 경찰백서, 경찰청, 2008.
- 金南辰·金連泰, 行政法 I, 法文社, 2007.
- \_\_\_\_\_, 行政法 II, 法文社, 2007.
- 김용세, 피해자학, 형설출판사, 2003.
- 김엘림 외, 성폭력·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0.
-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4.
- 김종률, 수사심리학, 학지사, 2003.
- 警察廳, 平成14年 警察白書, 東京: 警察廳編, 2002
- 金哲洙, 憲法學新論(第14全訂新版), 博英社, 2004.
- 金鐵容, 行政法 I (제11판), 博英社, 2008.
- \_\_\_\_\_, 行政法 II (제11판), 博英社, 2008.
- 배종대·이상돈, 형법각론, 홍문사, 2004.
- 李在祥, 刑法各論, 博英社, 2004.
- \_\_\_\_\_, 刑事訴訟法, 博英社, 2004.
- \_\_\_\_\_, 刑法各論 第4版, 博英社, 2000.
- 이운호, 범죄학, 박영사, 2003.

- 임 응, 형법각론, 법문사, 2003.
-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1998.
-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1.
-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
- 지광준, 은폐와 침묵을 넘어, 경인문화사, 1999.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2003.
- 최일섭·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5.
- 한성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03.
-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0.

## 2. 논문

- 경찰청, 인권경찰! 혁신의 시작입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2005.
- \_\_\_\_\_, 여성범죄수사요원 길잡이, 경찰청, 2003.
- \_\_\_\_\_, 범죄피해자 보호 안내책자, 경찰청, 2004.
- 구수경, 성폭력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여성연구논집 제4집,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3.
- 곽동원,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용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치안연구소, 2002.
- \_\_\_\_\_,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 충남대 학생생활연구 제30권, 충남대

- 학교 학생취업 및 생활지원센터, 2004.
- \_\_\_\_\_, 범죄수사와 피해자보호, 형사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회, 1999.
- \_\_\_\_\_,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수사연구, 제23권, 수사연구사, 2005.
- 김용세 · 유병관, 피해자학의 발전과 피해자 보호의 최신 동향, 피해자학 연구 제10권 제1호, 2002.
- 김재민, 경찰의 피해자 수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김호철, 대여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 대응전략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5호, 1996.
- 김성돈, 피해자 변호인제도의 도입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2.
- 김은경,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박광민,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1998.
- 박미숙, 현행법상 형사피해자의 범위, 한국피해자학회 2004년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04.
- 박영란 · 황정임, 여성에 대한 폭력 관련 서비스 연계방안, 여성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여성개발원, 2000.
- 박주상, 한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준영,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대책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변화순,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연구원, 2001.
- 서보학, 형사절차사어 성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 7권 제4호, 1996.
- 서영주,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송주영,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안동현, 아동학대의 폐해와 그 조치, 수사연구 제199호, 2000년 5.
- 안동준,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와 그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 4 합병호, 1990.
- 오영근 · 이천현,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4.
- 윤상민,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형사절차상 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 윤은주, 경찰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윤덕경 외, 미성년 여성 성매매 관련 법제의 시행실태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이경자, 성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2.
- 이경제 역, 비판적 피해자학 -전통적 피해자학의 피해자 개념에 대한 비판,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3호.
- 이명선,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李文姬, 性暴力犯罪의 被害者保護에 관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4.
- 이미정,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황우, 경찰행정학(제4판), 법문사, 2005.
- 이순영, 성폭력의 사회·심리·법률적 조명, 한국인간발달학회 심포지엄, 한국인간발달학회, 1996.
- 이은모,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보호방안, 교정연구 제10권, 2000.
- 이천현, 일본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4.
- 이호중,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저스티스, 제27권 2호, 1994.
- 장규원의 외 3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장규원, 수사경찰의 피해자 대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장필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지침서 개발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4.
- 전영실,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 조 국, 아내강간 불인정은 남성편향의 과소범죄화, 시민과 변호사, 통권 129호, 서울지방변호사회, 2004.
- 전대양, 강간 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1995.

조 옥,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송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_\_\_\_\_, 검찰수사상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토론회, 한국여성 의전화연합, 2001

최유진,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영애,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8호, 2000.

최은아, 兒童性暴力 被害者에 대한 警察의 保護方案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0

최인섭 · 김성언, 성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8.

표창원, 경찰개혁의 방향과 과제, 사법개혁국민연대 세미나 자료집, 2003.

한상훈, 최근 독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입법과 성적 자기결정의 보호성, 인도주의 형사법과 형사정책, 우범 이수성 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0.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연구, 제3호, 1994.

하태훈,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 안암법학, 창간호, 1993.

### 3. 언론 및 기타

- 김봄내, 증가하는 친족 성폭행 실태, 일요시사, 2008. 9. 20 일자.
- 김선주, 인권위 "男兒도 성폭행 피해자 포함", NEWSIS, 2007. 1. 8.
- 김용식, 아내 성폭행 유죄 의미와 서구사례, 한국일보, 2004. 8. 20.
- 김홍주선, 아동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오마이뉴스, 2008. 8. 12 일자.
- 배혜림 · 정재호, 아동성폭력 가해자 80% '知人' 수사기관 '2차성폭력' 여전, Newsis, 2008. 10. 23 일자.
- 이권효, 대구, 경북, 구미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설립, 동아일보, 2003. 9. 7일자.
- 손대선, 여성장애인 성폭행 위험수위①, NEWSIS, 2008. 3. 19일자.
- \_\_\_\_\_, 여성장애인 성폭행 위험수위②, NEWSIS, 2008. 3. 20일자.
- 장규석, 부산 CBS, 2008. 10. 24일자.
- 정봉협,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의 성과와 전망, 한국성폭력 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 가족과 성상담소 ·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공편, 반(反) 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성폭력 특별법 시행 10주년 기념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4.
- 정옥주, 가정내 성폭력 지구촌 확산에 충격, NEWSIS, 2008. 5. 13일자.
- 정지우, 道人 흥내 '사이비 승려'의 파렴치 범죄행각, 파이낸셜 뉴스, 2008. 8. 14 일자.
- 법무부,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견서, 2006.

#### [외국문헌]

Andrew Karmen, *Crime Victims: A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 (Eelmont,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Inc., 2001).
- A. Roberts, *Delivery of Services to Crime Victims: A National Surve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1), 1991.
-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the Abuse of Power: Resolution 40/34 of 29 November 1985.
- Irving J. Sloan, *Rape*(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s, Inc., 1992.
- K. M. York, *Defining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 A Policy-Capturing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2(4), 1989.
- Kube, 宮澤浩一 譯, ドイツにる被害者支援について, 警察學論集 54/7, 2002.
- J.R. Conte, *A Look at Child Sexual Abuse*, Chicago National Committee for Prevention for Child Abuse, 1986.
- Mary E. Odem & Jody Clay-Warner, *Confronting Rape and Sexual Assault*, Wilmington DE: Scholarly Resources Inc., 1997.
- Marilyn D. Mcshane/Frank P. Williams, Crime & Delinquency, Vol.38. No.2, April 1992.
- 田村正博, 日本における 警察の 犯罪被害者對策 その 推移と 特徴, 警察 政策研究 第7号, 警察大學校 警察政策研究 センター, 2003.

[참조 사이트]

<http://www.hotline.or.kr/> 참조.

<http://womanrights.org/> 참조.

<http://www.sisters.or.kr/> 참조.

<http://www.npa.go.kr/> 참조.

<http://www.kcvc.net/> 참조.

[http://seoul1366.or.kr/sub01/body1\\_1.php](http://seoul1366.or.kr/sub01/body1_1.php)

책임연구보고서 2008-10

##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

---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http://www.psi.go.kr)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